

로 끌려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라는 식의 접근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은 여성이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포장된다. 그 말은 곧 매춘여성은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인권 차별적 시선으로 귀결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아내=어머니'(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처녀 포함)와 '여성 고유 가치를 상실한 매춘여성'으로 구분지어 매사에 '성의 이중 기준'을 들이댄다. 기지촌 매춘 여성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여성의 당한 성폭력,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민족차별로만 접근했을 때 여성은 이분화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지촌 매춘여성'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 국가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와 인종주의, 가부장제와 여성차별, 게다가 '성의 이중 기준'이 불러오는 여성들 사이의 분할 지배를 둘러싼, 지금도 계속되는 억압이 있다.<sup>6)</sup> 이를 반미, 반일 선전을 위한 '민족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폭력의 구조를 축소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 한국, 미국... 어떠한 가부장제 국가에 의해서도 '군대 성노예'나 '기지촌 매춘 여성'의 인권은 언급되지 않았다.

1991년 고 김학순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50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치화되지 않았던 것과 그 술한 미군범죄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의 문제가 국가로부터 제기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줄 매춘여성의 존재(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줄 '양가의 규수'와는 구별되는)가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는 국가는 그로 인해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치부를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국가는 외국군대와 자국 남성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여성을 공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2000년 2월, 현재에도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논리속에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잣대로 재단되어 천한 인권과 귀한 인권으로 나뉘어진다.

### (3) 기지촌 매춘 여성이 당하는 범죄는 한국인 전체 피해와 구별된다

사람보다 '국가(군사)안보'나 '민족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의 기저에는 '미군범죄'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다. 이는 미군범죄는 '기지촌'의 문제, 기지촌 사람들이 주로 당하는 것이라는 사고와 연관이 깊다.

기지촌(基地村)... 외국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상행위(商行爲) 따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의 동네. 그러나 사전의 의미처럼 사람들의 의식속에 기지촌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지촌을 유쾌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곳이 웬지 읊울하고 숨기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외국 군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한국 여성의 집단으로 거주한다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때문이다.

6) 우에노 치즈코, "성. 계급 .민족", 『내셔널리즘과 젠더』 146쪽. 1999. 박종철출판사

한국남성들은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외국 군인에게 성을 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남성의 성욕은 '생물학'적인 것�이기에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매춘여성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여성이 외국 군대에 성을 파는 것은 '민족의 도덕성 상실' 뜻하므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1992년 윤금이씨가 미군 케네스 마클에게 살해당했을 때 미군처벌과 클린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윤금이 누이, 순결한 민족의 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살아서는 '천한 양색시'였던 그녀가 '양키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후에는 '우리의 누이, 조선의 딸'로 둔갑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은 '여성이 당한 폭력'을 '민족 유린'으로 환원하기 때문이다. '희생자가 순결해야' 민족이 유린당했음을 강조하기가 수월하고 반미 논리 또한 더욱 탄탄해진다. 때문에 희생자는 아무 '혐의'도 없는 순순한 존재이어야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는 여성 경험의 특수성을 부인하고 이를 민족 문제로 보편화시킨다. 민족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강간의 범죄는 그것이 외국군대에 의해 범해지기 전까지는 민족담론에서 전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sup>7)</sup>

기지촌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양색시', '양갈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갈보'는 '냄새나는 더러운 벌레'라는 뜻이다. 기지촌의 문제는 곧 기지촌 매춘여성의 문제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스스로 매춘을 선택한 더러운 여자들'이라는 낙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 희생은 감수해야한다, 민족주권이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가능케 한다. 하찮은 개인은 언제든 짓밟혀도 된다는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미군범죄가 대학교수나 기업체 사장, 대학생, 가정주부 등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였다면 아마 다른 식의 접근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부정하고 싶은 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범죄를 '기지촌 사람들(매춘여성)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집단의 문제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쉽게 주변화되고만다.

기지촌에서 매춘을 하거나 미군과 어울리는 여성을 부르는 한국의 '양(洋)색시'라는 표현과 미군을 남자 친구로 삼을 셈으로 기지 주변에 모여드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아메온나(アメおんな)'는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들이다. 양(洋)과 아메(アメ)가 모두 미국을 뜻하는 말이고, '색시'나 '온나(おんな)'는 여성을 비하시킨 단어다. 미국 군대에 성(性)을 파는 여성을 '미국여자(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민족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말이다. '순결'하지 않은 그들에겐 민족의 성원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기지촌 미

7)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 『한국 여성학』 제10집, 1994. 한국여성학회

군전용업소 문 앞에는 '내국인 출입금지', '여종업원 구함'이라는 팻말이 나란히 붙어 있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이다. 또한 매춘을 직업으로 삼은 여성은 아니더라도 여성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제지받는다. 언제든, 여성은 외국군인의 매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 "사실 기지촌에 있는 여자를 말야, 그 여자들은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거기까지 간 것 아닌가? 범죄가 한 두 건도 아니고 말야."(1996년 9월, 기지촌 매춘여성 살해 사건 직후, 남자 경찰의 말)

- "우리도 초등학생이 미군한테 성폭행 당했으면 오키나와처럼 시끄러웠을거예요. 그런데 매춘여성이 당하는 범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떠들지 않는 거지요."(1995년, 매춘여성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여론이 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 국회의원)

- "경찰에 신고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지 못 믿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더 보면서 원래 처녀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군하고 왜 어울려 다녔느냐, 거짓말하면 부녀보호소에 보내겠다 협박까지 했어요. 온 몸에 피멍이 들고 고막까지 터졌는데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1995년 1월, 수사관에게 당한 성폭력을 설명하며..미군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증언)

- "아니, 이정숙씨는 매춘도 그만두었다면서 왜 미군하고 동거했어요?"(1999년 9월, 동두천에서 이정숙씨가 사망했을 때, 미군하고 동거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민족문제에 관심많은 남성 활동가의 말)

- "우리가 미군철수하자는 거지, 여자를 성폭력같은 사소한 문제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99 주한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 때,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반미 반전 뿐'이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가수에게 곡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때)

미군 범죄와 여성은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이 '매춘여성, 소위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남녀에게 이중적인 성윤리가 당연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명예를 침어지게 된다. 그들의 상처만큼 깊고 질긴 것이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뿐리 깊은 차별이다. 기지촌 여자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제발로 그 길을 선택한 것 아니냐(결국 그 여자들이 문제다), 매춘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자발적으로 매춘 집단에 들어간 여성과 폭력의 '순수한' 희생자인 초등학생의 인권의 '값'은 당연히 다른 것이다), 원래 처녀가 아니었다면(이미 여자의 가치를 상실했는데) 미군 폭력 따위가 뭐가 그리 중

요하냐, 미군 좋다고 어울리는 여자들이 더 문제다….

기지촌에 있는 여자는 피해를 자초한 여자들이므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우리 사회는 무감각하다. 미군과 어울렸다는 것, 소위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미군 범죄를 '기지촌에 제발로 들어간 여자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폭력의 작동에 어떠한 일상적 기제가 관련되면서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해내는지 볼 수 없게 만든다.

요즘 기지촌 매매춘 밀집 지역에서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무도 '순결하지도 않은, 가난한 외국인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차별했던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된다. 성의 이중 기준을 내세운 가부장제의 시선은 또다시 힘없는 외국인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여성 인권에 들이댄 차별의 잣대는 다른 계층의 사회적 약자(신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쉽게 적용되는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했고, 현재 국내외를 넘나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베트남과 우르과이 등 원양어선이 닿는 곳 어디에서든 현지 여성들을 쉽게 사고, 여성의 임신하는 순간 버리는 것에 익숙한 한국 남성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들은 그들이 돈으로 사는 여성은 '노란색 변기(Yellow Stool)'라 불렀고, 한국에서는 '색시(젊은 여자)'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군사주의와 폭력은 서로 깊이 공생하고 있고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군 범죄를 '순결하지 못한 여성 집단'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인권을 차별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폭력의 사슬을 은폐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재생시킨다. 나는 이러한 폭력의 학습이야말로 우리 삶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 다. 인종주의

- "그래서 우리 군인도 여자 미군들 강간했다니까요."(1997년 5월, 미군들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한 것처럼 국군이 여자 미군을 강간한 것이 당연하고 잘했다는 듯... 미군문제에 관심많은 남자 대학생의 말)

- "원고를 수정해 주었으면 해요.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은 한창 미국 규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베트남 전쟁때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거론하는 것은 정세에 맞지 않잖아요? 미군에 대한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구요."(1999년 10월, 노근리 양민학살 관련 원고에 대한 통일운동단체 기관지 편집인의 말. 필자는 원고 수정을

거부했고 후에 원고가 그대로 실렸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 수정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외고이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과 다를 수 있고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 “내 딸이 저렇게 미군과 사귄다면 차라리 할복자살하겠다.”(1999년 5월 용산기지 앞, 미군과 동행하는 여성을 가리키며 통일 운동가의 말)

- “우리 국민이 뭐가 못나서 미국 백인들도 아니고 발가락에 깐 때만도 못한 검둥이나 메시 칸같은 놈들한테 당하는 난 말이야. 그애들 미국에선 얼마나 쓰레기같은 놈들인데.”(1999년 8월, 이름을 밝히지 않는 30대 초반 남성의 말)

- “미국놈들은 근본적으로 불상놈이다.”(2000년 1월, 미군범죄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집회 중에서 통일운동가의 말)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되는 위와 같은 폭언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상적으로도 미국놈, 검둥이, 양이(洋夷), 왜놈, 쪽바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오키나와<sup>8)</sup>에서는 ‘혼혈아(混血兒)’라는 말에 이미 인종적 편견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국제아(國際兒)’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고 하는데 한국에선 아직도 ‘튀기, 혼혈아’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기지촌에선 영어로 ‘half-pers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속하지 못하는 반쪽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자조적 의미로 사용된다. ‘튀기’를 사전 찾아보니 “① 인종이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②종류가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 잡종, ③수나귀와 암소사이에서 난 새끼”라고 적혀 있다. ‘튀기’는 은어나 속어, 비어가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가 소위 ‘혼혈인’들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구체적 개인의 존재 의미를 간과한 민족주의는 쉽게 인종주의를 낳는다. 인종주의 시선은 대상을 인식하기보다는 이를 폭력적으로 재구성해낸다.<sup>9)</sup>

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미국인, 미군, 미제국주의, 군사주의, 자본주의 폭력 등의 개념

8) 일본 열도 끝, 한국과 대만, 필리핀 사이에 존재하여 태평양의 키스톤(keystone)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琉球)왕국이라는 독립국이었다. 1609년 시마즈에 의해 정복되어 일본에 복속되었고, 메이지 유신 후인 1878년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졌으며, 1945년 일본 패전과 함께 미군에게 점령되었다. 27년간 미군정 통치를 받았으며 1972년 일본에 오키나와 현으로 복귀하였다.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니라고 설명되는 까닭은 바로 위와 같은 ‘통합과 분리’의 역사 때문이다. 일본 본토 면적의 0.6%이면서 제일 미군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 오키나와 섬 전체의 20%를 미군기지 차지하고 있어 ‘기지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9) 토미야마 이치로, “평화를 만든다는 것”, <당대비평> 1999. 여름호

이 혼재되어 무조건 ‘미국놈들은 나쁜놈들이다’라는 말을 자연스레 만들고 있다. 국가와 제도, 사람의 문제를 뒤섞어 놓고 ‘미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히려한다. 반미 논리 강화를 위해 ‘미국’과 관련된 것은 모두 나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평화를 짓밟는 군대의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지 미국인 개개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무기를 만들어 인명을 살상해서가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현지인들을 편박하기 이전에 현지인들을 비인간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되는 경험은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다해도 개인과 집단의 기억으로 각인된다. 역사적으로 학습된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대체로 잘 적용하지 못해) 군대에 지원하여 우연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군대에서 돈을 벌고 제대 후 인정적 노후를 소망하는 미군 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의 이등병에게 한국 군대의 군사문화, 병역비리, 군작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 존엄’의 자리에 사람을 망각한 ‘이념’이 놓여졌을 때 비인간화는 아주 쉽게 자행된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해 무엇을 알아서 ‘불상놈’ 취급하는가? 그토록 자연스런 폭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잘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함부로 적대시하는 무서운 감성, 편 가르기를 통한 지속적인 타자의 양산은 반평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누군가를 쉽게 타자화하는 습성은 폭력적 사고를 키운다. 사전에는 “불상놈(-常)-(-쌍)-아주 천한 상놈”이라고 나와 있다. 세상에 ‘근본적으로 불상놈’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근본적으로 천할 수 있는가?

정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세인가? 우리가 정치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효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운동(movement)’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의 가능성(정신적, 육체적)을 파괴하는 것과의 투쟁(지향과 실천)’이라 생각한다. 사람에게 가해진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의미는 무시된 채 미국이 나쁘다는 논리만을 강화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종은 ‘인종주의’를 만들어 낸다. 베트남 희생자는 제국주의 이득을 앞세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닌가? 그들이 당한 고통이 노근리 주민들의 고통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중의 희생을 문제화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약화시킨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종주의의 폭력은 그 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의 존엄도 함께 파괴한다. 이것이 인종주의를 경계해야 할 이유다. 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민족’의 이해만 앞세우는 태도는 우리 민족만 희생자라는 사고로 쉽게 연결된다. 사람의 문제보다 민족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인간의 고통은 주변화된다. 그 연장선에서 타인의

고통, 타민족의 수난은 관심 밖의 영역이 된다. 애초부터 인권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기에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겪는 문제는 더욱 쉽게 무시되는 것이다.

군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와 폭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되어 한다는 이야기를 재야, 학생단체, 지식인 집단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당장 미군주둔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미군범죄 피해자, 기지촌 주민, 매춘여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함성은 있어도 그 기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전되는 곳의 주민들 피해나 환경문제를 운동으로 제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인권과 평화의 보장'이 아니라 '미군기지 철수'가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오키나와에선 중부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을 북부 나고市 헤노코에 해상기지를 건설하여 이전하겠다는 현(縣)정부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하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나고시 주민들만이 아니다.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후텐마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기지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나고시 헤노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미군범죄 피해자와 '미군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들도 열심히 나서고 있다. 또한 이들 평화운동가들은 기지 반대운동을 하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가 한국으로 이전되어선 안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군사기지로 인한 고통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운동이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미군들이 일으킨 베트남전·한국전·걸프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 생명을 죽이는 전쟁 연습장(군사기지)으로 사용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지 반대 운동은 인간이 서로 공생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오랜 세월동안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반성과 한국군의 책임을 묻는 운동이 조직되지 못한 우리 사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자민족 중심으로 해석될 때, 인권은 물론 타민족·타지역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키나와, 한국 모두 '미군철수'라는 구호를 갖고 있지만 그 내면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는지에 따라 실천의 양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다'라는 말을 굳게 믿으며 '평화·공존·자립'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80년 광주와 제주 4.3의 수난을 체험하고 '광주 폭동'에서 '광주민중항쟁'으로 일컬어지기까지 또한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투쟁했던 이들의 귀한 경험이 군대 폭력에 저항하는, 군사력에 의존한 평화를 거부하는, 국가 테러리즘을 문제삼는 평화운동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깊

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적 맥락과 전제를 무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이후 인권/평화 운동에 새로운 성숙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II. 결론

나는 이 글에서 미군 문제를 '반미/민족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서 미군주둔을 구체적 개인의 인권 문제로 제기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내가 비판한 것은 미군 문제를 '민족주권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민족'과 '개인의 인권'을 선택의 문제로 설정하는 분리 대립적 사고와 사회 운동에 등급을 매기면서 인권을 부산물로 취급하는 위계적 사고 체계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미군철수운동은 안한다는 거냐, 왜 본질을 피해가는 거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매사에 적용되는 뿐리깊은 이분법적 구도, 미군과 관계된 다양한 운동과 고민의 부재,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성과 성찰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군폭력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미군 철수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미군범죄 피해자의 상처와 만나면서, 기지 환경오염의 실상을 보면서 개인의 삶의 평화가 '국가 안보와 민족 주권'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어 왔는지,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반평화적인 것인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전쟁, 나쁜 전쟁이 따로 없듯이 전쟁을 연습하는 군대 역시 좋은 군대, 나쁜 군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군사주의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미군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실제로 '강력범죄가 많을수록, 범죄 내용이 잔인할수록' 반미운동이 고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교통사고나 폭행, 사기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관없이 별 것 아닌 양 시시하게 취급되는 것도 체험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분과 성별, 범죄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포장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운동이 아닌 희생자가 많을수록 '힘'을 받는 운동, 피를 많이 흘릴수록 '분노'가 모아지는 운동을 보면서 나는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다. '희생자를 반미 선전의 도구로 삼아 민족적 분노에 의존한 운동', '피해자의 성별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포장되는, 인권의 가치가 다른 운동'이 과연 내적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가슴과 만나지 않는 운동, 고통을 외면한 운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눈을 감으면 결국 눈이 먼 미래를 맞게 된다. 인권이 매순간

최고의 가치로 배려되지 않는 운동은 위험하다. 이러한 운동은 현재의 폭력을 재구성하여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평화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는 노력이다. 여기서 공존은 강자가 살기 위해 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허울이 아니라 그야말로 함께 산다는 것, 모두가 주체가 된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정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평화란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정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란 어떤 행위의 정형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을 동반한 '지향과 과정'이다. 진정한 평화는 구체적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폭력에 못견뎌 하는 심성이 성숙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 폭력, 내면의 파시즘에 저항할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 그 폭력에 몸서리치도록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그 노력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폭력과 차별에 익숙한 사회성, 그것을 가능케하는 인식의 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 그 폭력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무엇 무엇을 하자는 선언'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 <참고문헌>

1. 강선미 · 야마시다영애, 1993,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한국여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2. 권인숙, 1999, '우리는 누구인가 -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 『당대비평』 겨울호
3. 김은실, 1999,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가을호
4. \_\_\_\_\_, 1998, '여성주의와 일상의 정치화'(1998), 『삶의 정치』, 대화출판사
5. \_\_\_\_\_, 1994, '민족담론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10집, 한국여성학회
6. 문승숙, 1999,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한국', 『당대비평』 겨울호
7. 이대훈, 1998, 「세계의 화두」, 개마고원
8. 이삼성, 1998, 「20세기 문명과 야만」, 한길사
9. \_\_\_\_\_, 1999, '국제질서의 변동과 비인도적 범죄(범죄양상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과 그 한계)',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10. 정희진, 1999,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1. \_\_\_\_\_, 1999, '김활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음에 대하여',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자료집 『대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 \_\_\_\_\_, 1999, "진정한"/"사이비" 민족주의 사유 방식에 대한 小考" (미간행)
13. 정유진, 1999, '주한미군범죄와 여성', 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미간행)

14. 부스러기 선교회 · 무지개집, 1995, 「이중문화가정 자녀들의 미래를 찾아서」, 도서출판 진홍
1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1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 「끌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17. 다케시타사요코(竹下小夜子), 1998,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미간행)
18. 마타요시 교오코, 1999,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겠다"(미간행)
19. 아라사키모리테루(新崎盛暉), 1998,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 역사비평사
20. 우에노 치즈코, 1999,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21. 후지메유키, 1999, '冷戰 體制 形成期の 美軍と 性暴力', 『女性・戦争・人権 2』 行路社
22. 타나카 히로시 외 6인, 2000, 『기억과 망각』, 삼인
23. 토미야마 이치로, 1999, '평화를 만든다는 것', 『당대비평』 여름호

## 학교 성폭력과 여성인권

(정장)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I. 문제제기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남기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우리사회 처럼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과거 여성의 정조는 목숨보다 중요한 덕목이기도 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화하여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성폭력의 실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듯이 보인다. 최근 발생한 장애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나 친아버지에 의한 지속적인 근친성폭력등이 그 한 예일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성폭력의 개념이 매우 정치적이어서 날로 확장되어 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사회에는 강간만이 성폭력이라는 통념이 일반화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등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성폭력의 한 유형이며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스토킹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제제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학교 성폭력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담당한 1987년의 파주여종고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교성폭력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낸 사건이라면 1996년에 발생한 △중학교 교장에 의한 여중생 성추행사건은 학교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96년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원장에 의한 집단 성추행이나 청주, 서울 등에서 발생한 교장에 의한 성추행은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게 한 사건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은 근친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가 받는 피해는 일반 성폭력보다 심각하다는데 있다.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은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이에 따른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자가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특히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휴학을 하거나 등교를 거부하여 학업을 포기하거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는 12개 행동강령 중 여아에 대한 권리를 조항에 포함시키고 여아에 대한 폭력의 근절과 여아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고 교육받을 권리와 포함시키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성폭력의 사례와 이에 나타난 학교 성폭력의 보편성과 특수성, 대책들을 살펴보며 여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 II. 본문

### 1. 학교 성폭력의 개념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규정한 성폭력은 "인종차별,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등을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 성의노예화, 성적 착취, 국제적 인신매매, 강제매춘과 성희롱"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폭력특별법과 1994년 여성개발원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학교 성폭력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 2. 학교 성폭력의 실태

학교 성폭력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학교 선·후배 동급생 등 학생과 학생간에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일반 성폭력과 만찬가지로 읊란한 말이나 성적 농담,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강간을 하는 등 모든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교 내에서 얼마나 성폭력이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전국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각 상담소의 사례와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아 볼 수 있다. 1999년 서울여성의전화의 통계에 따르면 선·후배 동기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 상담 1746건중 3.32%를 차지하고 있다.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은 0.85%를 차지하여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사·교수를 에 의한 학교 성폭력의 발생 비율은 낮으나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교수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을 주고 있다.

### 가. 교사·교수에 의한 성폭력 실태

1997년 조사된 한국여성의전화의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2575명중 33.7%의 학생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1)</sup>.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시킨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성폭력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여러명의 피해자를 낼 수도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해자가 전근하여 다른 학교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상당히 안고 있다. 보통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은 교육의 과정, 애정의 표현 등으로 합리화되며 나타난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의 귓볼을 만지작거나, 체벌의 일종으로 겨드랑이 안쪽을 꼬집거나,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를 칭찬한다는 명목으로 껴안거나,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미명 아래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교사나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손쉽게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존경하고 신뢰하는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력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음으로 교사나 교수의 행동이 성폭력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위 통계에 따르면 선생님이 성적 언어를 사용함, 선생님이 브레지어 끈을 당김, 선생님이 젖가슴 옆 겨드랑이를 만지작거림, 선생님이 젖가슴, 엉덩이에 대해 말하며 막대기로 찌름, 선생님이 등이나 엉덩이를 은근히 만짐, 선생님이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가르치는 성폭력 i과 선생님이 옷 속을 더듬거나 자기 몸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함, 선생님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함, 선생님이 성관계를 요구, 선생님이 강제로 성관계를 함 등 성폭력 ii에 대해 피해자 831명중 이러한 성폭력을 2번이상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24.3%로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의 반복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i를 경험한 시기는 중학교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ii의 유형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선생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의 한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도와달라며 남으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남았는데 담임선생님이 피해자에게 채점할 시험지를 하나 덜 가져왔다면서 같이 교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 갔다가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담임선생님은 빈 교실에서 피해자를 성추행을 했는데 선생님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일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의 담임선생님의 거취를 추적한 결과 현재도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임을 알게되었다. 피해자는 이제라도 법적으로 그 선생님을

1) 김혜선,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 (1997).

처벌하고 싶지만 처벌을 못한다면 학교에서라도 물러나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고소를 하거나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교육 청에 진정서를 내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내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부터 표면화되었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학은 갖가지 유형의 성폭력이 모두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대학 내 성폭력 상담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경우는 많은 경우 학점과 취업 등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장기간 상담한 이 모양의 경우는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피해 당시 4학년이었던 피해자는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과 교수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도 좋고 어느 종교잡지의 편집인이기도 했다. 4학년 2학기 개강 후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래문제로 상담을 해줄테니 연구실로 오라고 하여 연구실로 찾아갔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문학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해 주겠다며 앞으로 자기에게 그 동안 쓴 시도 보여주고 함께 취업도 알아보자고 유인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기는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하며 이혼할테니 결혼을 해달라는 등 갖가지 얘기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강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했고 가해자를 만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는 이미 피해자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친한 친구조차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해자를 만날까봐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다. 졸업 후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집안에만 틀어 박혀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본인은 졸업 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가해자인 상대방은 아무 일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지금도 인기 좋은 교수라는 것에 분노하였다. 그러나 성추행과 강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없었고 고소기간도 지나 법적 대응은 어려웠고 대학에 진정서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특히 교수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대학원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며 저항하기도 매우 어렵다. 위의 자료에서는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유형을 첫째 목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둘째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셋째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2)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97.1~98.6월까지 전체상담 5448건 중 3.3%, 그중 교수-제자간 성폭력은 24건 103회로 전체의 32% 차지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넷째 신체접촉 테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가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교수사회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성폭력 사건이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비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나. 선·후배 동기에 의한 학교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중 선·후배 및 동기들에 의한 발생한 성폭력은 대학 내 성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성폭력에 대해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 등에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칙제정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선·후배나 동기애에 의한 성폭력은 M.T나 동아리 모임, 술자리, 강의실, 등 모든 학내 외 공간에서 성폭력의 모든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선·후배 동기 등에 의한 성폭력은 친근감과 호감, 혹은 애정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껴안거나 슬쩍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성추행에 대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직장내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추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피해자가 성추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대학내 선·후배 동기들에 의한 성폭력은 여학생들의 느낌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하지 않고 여학생을 대상화하면서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에 편입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해방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대학이지만 아직까지 여성의식이나 성의식은 매우 보수적이며 남성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 준다. 동아리나 학과 등에서 학우들의 인간관계에서 살펴 볼 때 선배들이 일반 학우들에게 대해 갖는 권위나 영향력은 사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못지 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경우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이들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속한 집단내에서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피해 여학생에게 비난이나 호기심에 더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할 경우 자신이 소속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배제 당할지 모은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sup>3)</sup>.

### 3. 학교 성폭력의 성격

학교 성폭력을 권력관계적 시각에서 볼 때 학교 성폭력의 성격이 보다 잘 보여질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남자 성인과 여자 어린이라는 성별 관계와 연령관계, 그리고 사제 관계의 규정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교사나 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에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가. 학교 성폭력의 특수성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과는 달리 몇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많은 경우 성폭력이 교육을 빙자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교사나 교수들은 신체검사, 체벌, 훈육, 예절교육, 진로상담, 등 학생들과의 접근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 있다. 둘째,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성폭력임을 인지하는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사나 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사나 교수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나 교수의 유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르게 된다. 셋째, 초등학생일 경우 선생님이 학생을 껴안는 것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문화에서 성추행은 선생의 학생 사랑으로 얼마든지 위장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교사나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은 한 명의 가해자에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산의 유치원 원장에 의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중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 등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 경우가 많다.

다섯째, 교사·교수에 의한 학교 성폭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교사나 교수의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 본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이 성폭력이라는 확신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학교 성폭력이 표면화 된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나. 학교 성폭력의 보편성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성폭력이 일반적으로 갖게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학교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행사이다. 선생님이라는 위치는 학생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그 권위는 '스승'이라는 용어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권위하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권력 관계 속에서 학생의 교사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고 위협이나 희유로 그 의도나 실제 행동이 은폐되기가 쉬운 것이다. 더구나 선생님과 제자사이가 남자와 여자, 또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와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권력관계는 더욱 더 비대칭적이 되기 쉽다. 또 학교라는 것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므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교사는 학생을 위협할 수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저항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 성폭력과 같이 학교 성폭력 역시 피해자가 비난을 당한다. 많은 경우 주위의 교사나 교수, 혹은 △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까지 성폭력 가해자들의 편에서 피해 학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성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학생들의 행위가 교사나 교수의 성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들도 성의 이중규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가벼운 성추행이라도 당한 것이 공개되는 것을 대단히 꺼리고 있다. 더럽혀진 아이로 주위에서 인식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성폭력 사건을 덮어두려고 하고 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이런 권리관계 속에서 피해 학생들의 대응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중학교 피해 학생들은 무단 결석으로 퇴학을 당할까봐 교장이 선도를 한다는 미명하에 성관계 경험을 묻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밑으로 손을 집어 넣는 성추행을 했지만 참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교사에 이러한 성추행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쾌하다' 혹은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지만 실제로 피해 학생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섯째,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학교 성폭력이 여론화되면 학교측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한때의 경미한 실수나 성폭력문제가 아닌 교사와 학교의 갈등 등으로 왜곡시키려 한다. 또한 교감이나 교장의 경우 지역 유지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 가해자가 처벌받기는커녕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고 가해자가 동정을 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10쪽.

4) 민경자, 학교성폭력:특수성과 보편성,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에 관한 교사워크숍, 한국여성의 전화, (1997)

#### 4.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처벌상의 문제

### 가. 피해자

첫째, 피해자가 우울 무기력, 고립감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다. 학교 성폭력의 문제점은 학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같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분노, 공포, 우울, 무력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사나 교수는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는 더욱 크다. 대학 내 선·후배 동기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휴학하거나 가해자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사회나 학교 공동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오히려 고립당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어하거나 학습의욕이 현저히 떨어지는가 하면 전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학교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결국 피해자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사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고 이유는 말하지 못하면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거나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여 성차별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갖게 하는 문제가 있다. 성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성평등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나. 학교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

학교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하여 해당 교사나 교수가 징계를 받는다 하여도 가벼운 징계가 대부분이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한다든지, 3개월, 혹은 6개월 정직 후에 학교에 복귀하여 계속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 성폭력의 사후처리가 교사라는 신분을 보호하고, 교육제도의 명예를 수호한다는 외피속에서 성폭력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1) 경징계 중심의 징계와 가해자의 교단복귀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징계내역 분석을 보면<sup>5)</sup> 98년에서 99년 9월말 까지의 교

5) 신낙균,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9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1999).

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징계교원 자료 중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보고된 건 수는 총 40건이었다. 이중 징계위에 회부된 28건 중 경징계 15건(53.6%), 정직 6건(21.4), 해임 및 파면 7건(25%)으로 경징계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내 성폭력을 자행한 교사의 75%가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점임을 고려할 때, 경징계 중심의 징계는 학교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한 매우 형식적인 징계이다.

징계대상 교사를 학교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교원이 37.5%, 중학교 교사가 32.5%, 고등학교 교사가 17.5%, 대학교 교원이 12.5%로 나타났다. 이 중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에 해당된다. 특히 초등학교가 37.5%로 전체 징계대상 교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초등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대책이 매우 시급함으로 보여 주었다.

#### (2) 징계의 형평성의 문제 - 교장은 경징계, 기능직은 해임

징계 내용중 학교의 직접적인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징계위원회 회부된 5건 중 1건은 '인사조치', 4건은 모두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의 징계인 '견책'으로 처리되었다. 학교의 직접적인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윤리적으로 권한의 막중함에 비례하여 책임추궁도 엄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교감의 징계처리는 경징계에 치우쳐 교장·교감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장의 경우는 징계처리된 28건 중 경징계 15건(55.6%), 정직 5건(18.5%)으로 교장·교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징계 중심의 징계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기능직은 유사 사안의 비교를 할 때 교장·교사라면 경고·견책 처리되었을 사안이 '해임' 처분되었다.

### 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각 주체의 문제

(1) 학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은폐하거나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3학년 다니는 딸아이가 담임선생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는데도 선생님이 딸아이를 예뻐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이런 태도는 피해 학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학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2) 가해한 교사나 교수는 대부분 성폭력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학생이 귀여워서 그런 것이라며 대부분 교사나 교수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시인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

(3) 성폭력 교사나 교수에 대한 처벌을 학교내 문제니 학교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

장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하여 성폭력 사실을 쇄신하며 외부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 보다는 얼마나 여론화 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해자 처벌에 있어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는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반적 태도 그대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ㅅ 중학교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노는 아이들 취급을 당하는며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땅값이 떨어진다며 성추행한 교장을 비호하는 데모을 하거나 학교 성폭력이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가 아닌 학교와 교사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려 하는 등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와 함께 대응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혹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곳이 지역 공동체임을 생각할 때 지역의 의식화 및 연계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III. 맷음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 혹은 친밀한 관계인 학교 선·후배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학교 성폭력은 그 피해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보다 심각하고 피해자의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성폭력은 피해자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성역할 사회화, 여성의 역할을 내면화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학교 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성폭력을 행하는 교사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사들도 있다. 따라서 무엇이 성폭력인지 그로 인해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성폭력과 성평등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교직 이수과정에서 여성학과 성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교사 연수시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 2. 학생들에 대한 체계화된 성교육과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나

교수의 권위에 눌려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알고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는데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선생님들의 올바른 태도와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사실을 의논하고 함께 해결하는 사람도 교사나 교수인 경우가 많다<sup>6)</sup>. 또한 교사나 교수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 경우도 있다. 서울의 ㅈ 중학교의 상담선생님은 한 학생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학년주임 선생님으로 사람 좋기로도 소문난 한 선생님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학년주임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선생님께 제대로 인사를 안했다며 버릇이 없다고 방과후에 예절 방으로 와서 예절을 배워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이 방과후에 예절방으로 갔더니 학년주임 선생님이 아까 인사 안한 별로 큰절을 하라고 해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뒤로 와서 껴안아 너무 놀라서 뿌리치며 나왔다는 것이다. 학생의 상담받은 선생님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알렸고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에서는 학년 주임선생님에 대한 평이 매우 좋아 징계를 안하려고 하다가 상담선생님이 강경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차원에서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있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해당 선생님에게 사실 확인을 받고 경징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지대하므로 선생님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급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칙제정 운동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선·후배 동기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에게 교정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있어야 한다.

#### 4. 성폭력 가해 교사나 교수에 대한 중징계등 강경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나 교수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직에 남게 해서는 안된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학교를 뚫고다니며 계속 교직에 남아 있을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풍토와 남성중심적인 학교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내에서 발생하는 선·후배 동기에 의한 학내 성폭력은 남성중심적인 대학문화의

6) 김혜선,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 한국여성의전화(1997), 30쪽, 대상에 따른 상담의 내용중 성추행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보자가 다른 대상들에 비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학교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99년 발생한 서울사대부고 교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처럼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재 교육계의 풍토에서 학교 성폭력의 근절은 매우 요원할 일이다.

6. 학교 성폭력의 예방,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망 구축이 요청된다. 학생자치회, 교사나 교수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감시와 예방, 발생신고 및 체계적인 처리과정에 개입하게 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출판, 1999.
2. 청소년 대화의 광장, 청소년 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실태, 1996.
3. 신낙균,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1999.
4. 신양중학교 공동대책위원회 보고서, 1996.
5. 서울여성의전화, 청소년 성폭력예방과 성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숍, 1999.
6. 청주여성의전화 학원성폭력 대책자료
7.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1999.
8. 한국여성의전화, 교사·교수에 의한 학생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1997.
9. 한국여성의전화, 청소년 성폭력예방과 성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숍, 1997.

##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 사건과 해결방향

정희상(시사저널 정치팀장)

### I. 집단 양민학살, 50년의 은폐와 결곡.

민족 분단과 한국전쟁의 비극이 남긴 상처 중 하나가 실로 50년만에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다. 1950년 8월 9일 전쟁 중 피난길에 오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 5백 여명을 미군이 집단 학살한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진상 조사와 보상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가을 노근리 사건이 공론화한 것을 계기로 언론들은 그동안 묻혀져온 전국 각지의 유사한 양민학살 사건에도 한때 관심을 보였다. 주로 미군이 저지른 피난민 학살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이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미군 관련 학살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건국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부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들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가공할 집단학살을 저질렀다. 그 규모와 대상은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시대 정신으로 자리잡아온 '반공의식 고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학살, 납치, 범죄들은 모조리 인민군과 그 사주를 받은 좌익의 소행으로 돌려졌다. 그 결과 피학살 유족들은 지난 40년간 가슴에 흐르는 선혈을 쓰다듬으며 국가와 사회를 원망해왔다. 가위질 당한 학살의 진실로부터 국민들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오로지 외국의 미이라촌 학살 사건이라든지 킬링필드 학살사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사건, 코소보 난민 학살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쟁범죄는 남의 일인 것처럼 알고 지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획일적 극우반공이데올로기 체제 아래서 사회 각계의 지도층과 양심세력은 적어도 양민집단학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국에 걸쳐 그 상처가 비켜간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인간성이 피폐할 대로 피폐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얼굴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양민학사에 대한 전 사회구성원의 철저한 외면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때는 87년 6월 항쟁 이후였다. 이무렵부터 비로소 40여년간 은폐되고 가위질당한 양민학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 둘씩 복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월간지 <말>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현대사 발굴 시리즈로 전국 각지의 은폐된 양민학살 사건을 20여회에 걸쳐 추적 보도했다. 이 내용 중 국군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양민학살 조사기록은 1990년에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돌베개 출판사)라는 단행본으로 따로 나왔다. 친일파 연구가인 김삼웅씨

도 1996년에 펴낸 <해방후 양민학살사>를 통해 은폐된 양민학살 진상을 기록했다. 학계에서는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가 <조봉암과 1950년대(하)-피해 대중과 학살의 정치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전쟁 시기의 집단 양민학살을 다뤘다. 최근에는 미군 측 기밀문서 입수를 계기로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자행된 대전, 대구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사건이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을 넘어서서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민족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민족 내부의 깊은 상처가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인권운동 측면에서 되돌아 보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군으로 참전했다는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상처 치유작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등 소위 아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양민학살의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일부 집단 양민학살 유족들은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환부를 드러내 보이며 상처 치료를 호소해왔다. 이제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을 진흔하고. 그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도 달래 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는 이땅에서 전쟁과 양민학살이라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양민학살 사례들은 바로 그런 ‘억울한 참극’에 대한 조사 기록이다. 이 기록은 지난 10년간 필자가 추적 조사한 내용과 제 4대 국회 진상조사반(1960년 4.19혁명 직후)이 조사한 국회 공식 기록을 토대로 정리했다. 아울러 90년대 후반 들어 언론계와 학계, 일부 민선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일부 지역의 양민학살 기록을 추가했다. 전쟁 전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양민학살이라 할 수 있는 제주 4.3항쟁 관련 내용은 제주 지역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등에서 세밀한 조사 작업을 해 공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 1. 전쟁 이전의 집단 양민학살, 문경양민학살 사건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9년 12월24일 정오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부락 남녀노소 86명이 근처를 지나가던 국군 정찰부대에 집단학살당한 사건이다. 가해부대는 당시 문경 점촌 지역에 주둔하던 국군 제3사단(사단장 송호성) 25연대(연대장 유회준) 3대대 7중대(중대장 유옹철) 휘하 2개 소대였다. 학살을 직접 자행한 소대는 2소대(인솔 책임자 안택효 중사)와 3소대(인솔 책임자 유진규 소위) 병력 72명이었다. 당시 무차별 주민학살로 희생된 마을 주민은 남자 43명, 여자 43명이었다. 여기에는 젖먹이 3명과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9명이 포함되어 있다. 군부대는 이어 400년 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이 마을 가옥 27채를 불살라버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상당하는 바람에 확인사살을 면한 12명의 중상자들은 점촌병원으로 후송되

어 치료를 받은 뒤 일부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순전히 현지 부대 인솔자의 오판과 정찰 임무만 수행하라는 상부 명령 무시였다. 즉 가해 부대는 순찰만 돌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군부대가 들려도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여긴 마을 분위기에 분개해 무차별 인간 사냥을 벌인 것이다.

사건 당시 출타중이었거나 무참한 인간 살육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을 주민은 60여명이었다. 이들은 사건 후 사라진 마을을 영영 등지기도 했고, 일부는 없어진 마을 터 아래에 집을 지어 새로 마을을 형성한 뒤 지금까지 한맺힌 세월을 살고 있다. 일가족이 전멸해 대가 끊긴 집안도 6가구에 이르렀으며 생존자들 역시 대부분이 일가족을 잃고 한두명씩 살아남은 탓에 이후 이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입도 볕긋할 수 없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유족회를 결성해 정부에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듬해 일어난 5.16쿠데타 직후 유족 대표들이 포고령 위반죄로 체포되어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사건에 대해 은폐를 강요당한 채 피맺힌 가슴을 안고 살아왔다. 지난 89년 유족회를 결성한 피학살 유족들은 지난해 12월24일까지 사건 현장에서 8차례 합동 위령제를 지내 왔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등을 상대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20여회에 걸쳐 제출했지만 역대 정부는 아직껏 이렇다 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경양민학살 사건은 사건 자체의 범죄성도 문제이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부가 그 진상을 알고도 철저히 은폐한 뒤 ‘공비들의 소행’으로 둔갑시켰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당시 보고 계통을 통해 문경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사건 현장에 파견했다. 사건 발생 3주일 후인 50년 1월17일 현장을 방문한 신국방장관은 피학살 유족들을 김통초등학교로 불러모아 위로 강연을 한 뒤 보상 조치를 들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후 돌아갔다는 것이 생존 유족들의 증언이다. 지금도 첨첨 산간 오지인 사건 현장 인근의 김통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학사보고서첩(50년 1월17일자)에는 ‘신국방부 장관 각하 내교 강연’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신장관은 문경 군수에게 1백만원을 건네면서 생존자들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고, 바로 그 돈으로 사라진 마을 아래쪽에 새 집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신장관이 다녀간 뒤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된 후 공비들 소행으로 둔갑했다. 산북면사무소에 비치된 피학살자 호적에는 공비들이 총살했다고 기록되었으며, 당시 문경경찰서장이던 이의승 경감과 이기용 산북면 지서주임은 공비의 만행을 못막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정부(국방부)는 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 진상 인정을 부인하고 있다. 물론 사건 현장 생존자들과 학살 부대의 길안내를 맡았던 2명의 인근 주민은 군부대 소행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사건 직후 문경

군수를 역임한 채문식 전 국회의장 역시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 국군 부대의 만행임을 기록했다. 채문식씨는 필자와의 몇차례 접촉에서 “내가 사건 후 문경 군수로 갔을 때만 해도 우리 군대가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면 언제 총맞을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지금 와서 밝히지만 우리 군대가 저질렀다. 학살 책임자들은 사건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갔다”라고 밝혔다.

학살과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반세기 세월 동안 파괴된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도 돌아다 보지 않는 가운데 외로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온 생존 유족들은 98년에야 비로소 정부가 감추고 있던 이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 정부는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서울의 경찰 정보과 형사들을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벌였는데 그 수사기록이 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수사 기록은 당시 주한미군임시군사고문단장이던 로버츠 준장이 입수해 본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보고서 작성자: 국립경찰국 보안과 백한종 경감, 이구락 경위. b.장소: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 부락. c.관련 부대: 예천과 점촌에서 온 3사단25연대2대대7중대2소대 및 3소대의 한국군. d.조사 내용:이 마을에는 23가구 주민 1백39명이 살고 있었는데 학살 당시에는 방문객 5명(남자 1명, 여자 5명)을 더해 모두 1백44명(남자 75명, 여자 69명)이 있었다. 7중대장은 유옹철 대위(28)이다. 7중대 1소대는 문경에 주둔하고 있으며 2소대는 점촌에, 3소대는 예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석달마을을 공격한 부대는 2소대와 3소대이다. 2소대 지휘관은 안택효 중사(28)이고 그의 휘하에는 32명의 병사가 있었다. 3소대 지휘관은 유진규 소위(23)로서 그의 휘하에는 35명의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M1소총, 유탄발사기, 수류탄, 총검으로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다. 학살은 49년 12월24일 13:00부터 14:00까지 자행했다. 공격하는 와중에 가옥 23채와 내부의 모든 가재도구가 불탔으며 마을 주민 1백44명 중 남자 43명과 여자 43명이 살해되었고, 민간인 남자 5명과 여자 7명이 다쳤다. 문경경찰서 정보과에서 파견한 형사 황영훈은 7중대장과 함께 있었는데 소대 지휘관이 수상한 마을을 공격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보고를 받고 중대장이 소대 지휘관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말했다. 황형사는 문경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다음날 문경 경찰서에서는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은 뒤 시체들을 가매장했다. 그때까지 다친 여자 3명과 어린이 2명이 시체더미 속에 생존해 있었다. 경찰은 부상자들을 김천 도립병원과 점촌병원으로 후송했다. 중대장은 자기가 주민 학살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단지 2개 소대에게 정찰 임무만 마친 뒤 17:00에서 18:00사이에 귀대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상은 군대를 현장으로 안내했던 민간이 2명과 황형사, 부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했다.” (이상 문서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주한미군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서한철 중 37964파일)

한편 문경양민학살에 대해 당시 주한미군측은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임시군사고문단은 한국군 3사단이 미군측에 ‘공비 70여명이 석달 마을을 습격했다’는 보고서를 보내오자 즉각 별도의 조사를 실시했다. 로버츠 준장은 그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한국군의 보고서는 게릴라들의 전술이 (양민학살로)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임시군사고문단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서한철에 적고 있다. 주한미군임시군사고문단의 자체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달 부락에는 가옥이 총 27호 있었고, 주민은 1백39명(남자 77명, 여자 62명)이었다. 이마을 주민들은 한국군에 의해 사실상 전멸되었다. 이마을 주민들은 게릴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마을은 경찰과 군대의 작전에 두 번이나 조력한 적이 있다. 49년 12월23일 16:00에 한국군 3사단25연대7중대의 2소대와 3소대가 각각 점촌과 예천(좌표 1142-1534)을 출발했다. 이들이 받은 명령은 현 주둔지에서 이동해 12월24일 10:00까지 상선암동에서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그 뒤 석봉산 달비산 단산에 대한 정찰활동을 수행한 연합부대는 12월24일 18:00에 갈평리에 도착했다. 석달 부락은 정찰 경로 중앙에 위치했다. 2개 소대는 지정된 시각인 10:00에 합류해 석달부락에는 13:00께 도착했다. 부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주민 백여명을 집합시킨 뒤 게릴라에게 협력했는지 추궁했다. 주민들은 협의를 부인했지만 2개 소대는 더 이상 아무런 확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바주카포 수류탄 소총 카빈총 등으로 무차별 사냥을 실시했다. 군대의 공격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도발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무기가 없었던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방어도 못했다. 한국군은 다친 마을 주민을 점검해 소총으로 확인사살했다. 부상한 남자 5명과 여자 7명은 주민들의 시체 밑에 죽은 듯이 엎드림으로써 최후의 일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이날의 잔학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한국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진규 소위(3소대) 김점동 하사(3소대) 안택효 중사(2소대). 7중대장 유옹철 대위와 문경 경찰서장 이의승 경감은 사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유대위는 이의승 경감에게 본부에 허위보고하도록 종용했다. 그리고 나서 유대위는 자기 상관에게 게릴라들의 소행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다.”(미국국립분서보관소 Record Group 338, Entry 11007, Box 69)

한편 문경양민학살 직후 주한미육군은 동경에 있던 미국동군총사령부(맥아더 사령부)에도 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했고, 극동군 사령부는 정보보고와 분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 태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같은 사실은 기밀이 해제된 극동군사령부 문서들을 통해 밝혀졌다. 서울 주재 주한미육군 무관은 사건 발생 보름 후 쯤(50년 1월11일)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에게 보낸 비밀 전문(2급기밀, ARMA10호 전문)을 통해 한국군의 양민학살과 은폐조작 경위를 보고했다. 이

전문에서 미육군측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처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에 대해 극동군사령부는 3차례에 걸친 비밀 보고서를 통해 문경사건에 대한 한국군 수뇌부의 움직임과 함께 은폐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살당한 마을 주민들은 경찰의 작전에 협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건 책임자는 당연히 기소되어 처형될 것이다(50년 1월16일자 비밀문서 NO 2686). 한국 육군본부는 한국군 주요 지휘부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3사단장 이옹준 소장과 전임 2사단장 송호성 준장을 전격해임했다. 두사람 모두 49년 12월24일 석달부락 학살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해임 사유였다. 학살사건 직접 책임자인 25연대장 유희준 중령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강도현 중령을 발령했다. 유중령은 보병학교에 배속되었다(50년1월24일자 비밀문서 No2694).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부참모장인 신태홍 소장은 1월13일부터 20일까지 안동에 주둔한 25연대 관할지역 내의 군시설을 시찰했다. 신장관은 이 자리에서 석달부락 학살사건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갔다. 한국군은 학살의 전말을 국민에게 숨기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50년2월15일자 비밀전문 No2176)”.(이상 미국동군사령부 비밀문서, INTELLIGENCE SUMMARY)

이처럼 문경 양민학살과 관련된 진상이 초동 기록에 의해 날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피학살 유족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문서들을 입수해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 등에 사실 인정과 진상 규명, 호적 정정 및 위령탑 건립 등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경양민학살 사건 유족들은 지난 50년간 양민학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온 사회와 국가, 인권 단체 및 양심세력을 원망하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자신들의 문제를 국제 인권기구와 단체들에 호소하겠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 2. 전쟁 시기의 집단 양민학살 사건

### 가. 보도연맹 학살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도 평택 이남 지역에서 전국에 걸쳐 약 30만으로 추산되는 비무장 민간인이 퇴각하던 군인과 지역 경찰, 우익단체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이다. 이 가공할 학살 사건은 지금까지 국민에게 용어조차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보도연맹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동안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적이 거의 없

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히 한국 현대사 최대의 양민 학살극이라고 보아야 할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전쟁 후 50년 가까이 묻혀왔다. 게다가 이 사건은 그 특징으로 볼 때 전국 과정에서 수반된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통제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그 실상이 공개될 경우 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역대 정권이 철저히 논의를 금기시해온 점도 은폐에 일정한 작용을 했다. 그러나 보도연맹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은 아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는 그 피해자들과 피해 현장이 도처에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수원 이남의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어느곳을 가든 60대 이상 주민들에게 물으면 이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마을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도 87년 6월항쟁 이후 부분적인 조사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월간 <말>지 88년 2월호와 89년 3월호, 그리고 양민학살 르포집인 <이대로는 눈감을 수 없소> (1990.돌베개) 에 사건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가 <조봉암과 1950년대(하)-피해 대중과 학살의 정치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보도연맹 학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이에 앞서 필자는 1989년부터 1년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틈틈이 보련학살 실태를 조사한 뒤 양민학살 르포집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지 도시의 동단위나 시골의 면소재지에서 보도연맹원 집단학살이 비켜간 지역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어서 93년과 98년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건을 <시사저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 화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처(범국민적인 위령제 등)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후세대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국민보도연맹(약칭 보련)이란 1949년 6월 5일 발족된이른바 ‘사상전향자 조직’을 일컫는다. 당시 사상검사로 이름을 떨치면서 보련 결성을 주도했다는 오제도 변호사는 보련 결성 당시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상검사로서 좌익을 다뤄본 경험과 일제때 대학 시절에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얻은 지식, 2차대전 때 나치가 공산주의에 대처한 것, 공산주의가 나치에 대처한 것 등을 참작해 보도연맹 결성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내무 법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사회 지도자들에게 전 의해 동의를 얻어 실시했습니다. 그 때 보련은 세계 사상사에 유례가 없는 성과라고 평가받아 외국에서도 와서 조사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서 보련원들이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경기도 이남에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는데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보련 결성을 구상했다는 오씨에 따르면 학살을 목적으로 이 단체를 결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오씨는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 서울에서 미처 피난가지 못한 군경과 정부 관리들의 가족이 의외로 많이 생존한 데는 보련원들의 도움이 컸었다면서 수원 이남에서 남한의 군경이 심사도 없이 무조건 끌어다 학살시킨 데 대해 지금

이라도 정부가 공식 확인해 사과하고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가 설명하는 보련 결성 취지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련에 가입된 사람들은 개전 초기 전원 학살 당하는 운명에 처했다.

원칙적으로 보련 가입자들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한 사람 중 전향한 사람'이었다. 즉 해방공간과 전국 시기에 일어난 대소규모의 좌익투쟁에 관련되었던 사람 중 전향자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 남로당원은 물론이고 여운형계의 인민당, 김구 계열의 한독당원 등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 입장에 섰던 인사들조차 보련 가입자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49년 11월30일 남로당 포섭주간을 마감하면서 발표한 서울시 전향자들의 소속단체에서 드러난다. 그 내용을 보면 남로당,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여성동맹, 민주학생연맹, 보건연맹, 인민당, 전농, 출판노조, 근민당, 인민위원회, 한독당, 신민당 등 22개에 이르고 있다(<동아일보> 1949년 11월16일자).

보련은 결성 단계에서부터 탈법적 조직이었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교수는 그의 저서 <조봉암과 50년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참극을 가져오게 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련은 이승만이 억압적 조치와 관련해서 종종 사용하던 대통령령에 근거하지도 않았다.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원래 보련은 정부에서 조차 사소하게 여겼던 그런 조직이었다. 일제가 준전시통제에 들어가면서 1936년에 공포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1937년에 만든 사상보호단체인 '대화숙', 1938년에 출범한 사상보국연맹 등을 상기시키는 보련은 수십만명의 인권을 통제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파시즘적 국가관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보련 가입은 강제적이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가입을 둘러싸고 잦은 실갱이가 벌어졌다. 당시 보련원들에게는 관제공산당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어서 보련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전반적인 추세였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지방이 특히 심했는데 주로 현지 경찰 및 대한 청년단 등 우익단체에서 보련 가입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회비를 징수해가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준도 없이 과거 좌익활동을 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까지 보련에 가입시켰던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쨌든 가입자 수는 1950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30만명을 웃돌았다는 것이 보련 입안자인 오제도씨의 설명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로 이들을 상대로 개전 초기 2개월동안 수원 이남의 전국 곳곳에서 전대미문의 가공할 살육극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과 경기북부지방은 위낙 빠른 시간에 인민군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보련원을 소집할 경황이 없어서 살육의 화를 면했다. 그러나 수원 이남지방에서는 보련 맹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각 지자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당시만 해도 신문과 라디오가 드문 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모르고 있을 즈음이었다. 전국의 보련 맹원들은 경찰의 소집 통지를 받

고 정기적인 교육이려니 생각하고 나섰다가 영영 불귀의 객이 되었던 것이다. 육지에서는 산골짜기나 계곡 강가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집단 총살했고, 해안지방과 섬에서는 배에 싣고 바다에 수장시켰다. 보련 학살은 지역에 따라 시간차이가 있는 하지만 대략 50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자행되었다. 학살 시기의 차이는 각 지역마다 인민군에 밀려 후퇴하던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필자와 <말>지에서 일부만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규모는 엄청났다. 1950년 7월1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면 울면, 설정면등 남부 3개면에서 33명이, 호법면 대월면부발면 등 북부 7개면에서 70여명이 집단학살당했다. 경북 문경군 호계면 별암리 견탄리 태봉리 보련원들은 7월12일 지서의 소집 통지를 받고 나섰다가 속칭 말무덤고개(현재 문경시멘트공장 터)에서 2백명이 학살되었다. 점촌지역 보련원들은 문경군 영순면 모내마을 야산에서 3백명이 총살당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7월20일 전주시 황방산에 구덩이를 파놓고 전주지역 보련 맹원들을 끌어다 집단학살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주민들은 수백명이 학살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는 정읍경찰서 뒤뜰과 정읍 농업학교 실습지에서 집단학살했고, 부안에서는 성서면사무소 뒷산에서 학살했다. 충남 대전에서는 7월14일부터 16일까지 5백여명의 보련원들을 끌어다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에서 집단학살했다. 이장소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1천8백명을 집단학살한 바로 그 장소였다. 전남 광주에서는 일제때 검도장으로 쓰던 무덕정에 소집한 후 광주와 장성 사이에 있는 산동교와 무동산 중심사 절 밑에서 학살했다. 함평군은 불갑산 자락에서, 목포 해남 완도 여수 진도 등에서는 바다에 실어가 돌을 매단 채 총을 쏘아 집단 수장시켰다. 경북 대구의 보련 맹원들은 가장 성서 월배 팔공산 등에 끌려가 학살되었고, 성주군 월성군 달성군 봉화군 영일군 영천군 등 각 군단위 지방에서는 지역내의 산골짜기에서 학살당했다. 경북의 경우 4.19 직후 유족회가 결성되어 그 숫자를 조사한 뒤 피학살자가 3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다. 경남의 경우 진주 산청 함양 하동 등 지리산 방면에 거주하던 보련맹원들은 지리산 골짜기로 끌려가 학살당했고, 충무 통영 삼천포 사천 등에서는 바다에 수장되었다. 부산에서는 505특무대에 끌려갔다가 수장되거나 부산 양산 김해 등지의 산악지역에 끌려가 총살당했다. 그밖에 경주 울산 양산등지에서도 수장형식으로, 그리고 의령 함안 김해 진영 등지에서는 부근 야산과 낙동강변에 끌려가 집단학살된 뒤 강에 버려졌다. 제주도 보련원들은 섯알오름 탄약고터에서 학살되었다.

필자는 취재 도중 전국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보련원으로 끌려가 학살당한 사람은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련 입안자인 오제도씨의 말대로 그 숫자가 30만명이 넘었다면 그에 버금가는 숫자가 그대로 학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학살을 보면 한 서울시의 보련원 수는 50년 5월 말 기준으로 2만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밖에 참변을

모면한 지역을 포함해도 그 수는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 최대의 양민학살 사건이라 할 보련학살은 4.19혁명 직후 각지의 유족들이 국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부분적이나마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집단양민학살과 달리 보련학살은 그당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국회 조사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거기에는 보련 맹원들이 과거에 좌익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 양민'이라 볼 수 없다는 군당국의 주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법적 절차 없이도 비무장 민간인을 '빨갱이'라고 물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 그러나 그무렵에도 사회적 반론이 드셨다. 가장 활발하게 피해조사작업을 벌인 경북지역의 한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보련에 가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 이유는 보련이라는 단체가 창설된 연유와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정부는 보련가입 그 자체로 일절 과거를 묻지 않고 애국적인 국민으로 포용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련원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양민의 서열에 들어가야 한다. 또 형집행에 대한 법절차의 문제를 기준으로 둘째도 양민이건 비양민이건 그런 방식의 집단학살이란 도시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집행은 법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철칙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함부로 국민들을 끌어다가 아무 절차도 없이 집단으로 총살시킬 수 있겠는가..."(영남일보 60년 6월17일자 사설).

그러나 이듬해 발생한 5.16 쿠데타는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도록 강요했다. 쿠데타 세력은 전국의 모든 양민학살 사건 관련 활동을 탄압하면서 보련학살의 정당성을 부인한 '용공분자'로 몰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피해 유족들은 보련학살의 진상을 물론 그 위법성 여부조차 입밖에 꺼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보련 입안자로서 그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오제도 변호사가 오늘날에는 이들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학살을 비판하면서 범국민 차원의 위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

한국전쟁 초기에 대전형무소와 대구형무소, 부산형무소에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수용자들이 군현병대에 끌려가 집단학살당한 사건이다. 일부 형무소 학살사건이 처음 공개된 때는 4.19 직후에 열린 제 4대 국회에서였다. 당시 국회는 전쟁시기 양민학살 진상조사반을 편성했는데 윤용구 임차주 주병환 의원이 형무소 학살사건 조사를 맡아 부산과 대구 형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학살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1천 4백2명이 학살당했고, 부산형무소에서는 4천8백32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한국전쟁 시기에 자행된 전국의 형무소 학살 중 일부에 국한된 것이다. 전쟁 발발 후 이승

만 정부는 당황하여 서대문 형무소 등에 수용된 기결수와 미결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피하였다. 인민군이 진주하여 서대문 마포 인천 형무소 등의 옥문이 열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이승만 정권은 대전 이남 지역에 있던 형무소 재소자들을 처치한 것이다.

전국의 형무소 재감자들이 정확히 얼마가 학살되었는지 총 숫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의회의 4.3특별위원회 등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48년 4.3사건 뒤 육지로 이감된 재소자 가운데 생존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마찬가지로 평택 이남 지역의 형무소 수감자들은 대다수가 학살당했다고 보야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1949년 12월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자는 3만명에 가까우며, 1950년 2월에 국보법 위반 피의자가 전 죄수의 약 8할을 점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국 형무소 재감자는 3만7천3백 55명이었다. 이중 서울(8천7백82명), 마포(2천3백15명)형무소와 부천 영등포 춘천 개성 인천 형무소 재감자는 1만7천1백6명이므로 평택 이남 형무소 재감자는 2만 2백99명이 된다. 그런데 이 재감자 수에 미결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승렬 법무부 장관은 1950년 2월에 서울 형무소의 경우 재감자가 8천7백97명, 미결수가 6천2백명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전쟁이 났을 때는 서울 형무소의 재감자가 8천7백82명이기 때문이다"(<조봉암과 1950년대> 하권, 584쪽)

결국 개전 이후 후퇴하던 이승만 정부에 의해 즉결 처형된 전국의 형무소 재감자는 최소한 2만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형무소 학살자는 부산 대구 대전형무소를 합쳐 모두 8천여명. 우선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50년 7월8일부터 사흘동안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에서 자행되었다. 대전형무소는 전쟁 직전까지 제주 4.3항쟁 관련자 여순사건 관련자 등 군사재판을 받은 3천명 정도의 정치범이 수감되어있었다고 한다(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D93~94쪽). 이들을 학살할 당시에는 대전이 임시수도(6월27일~7월16일)였다. 이승만 정부는 군현병대로 하여금 바로 이들을 집단 학살도록 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7월8일 아침부터 10일 저녁까지 3일간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재미 교포인 이도영박사(53. 플러스 생활복지연구소 연구위원)가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관련 비밀문서와 처형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확보해 국내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박사는 이 자료를 4.3 항쟁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 취재를 해온 제주지역 신문<제민일보>에 전달했다. 미군측 비밀문서에는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전쟁발발 직후 남한 경찰은 피의 처형을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군은 서울을 함락했을 때 감옥에서 추천명의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진격해오는 적군에 의해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을)총살한 것으로 믿어

진다. 의심할 바 없이 총살 명령은 최고위층에서 내렸는데 정치범들을 전선지구에 있는 마을에 가둬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벌어진 정치범 1천8백명에 대한 처형은 1950년 7월 첫째주 3일간에 걸쳐 벌어졌다. 사진은 극동군사령부 연락장교인 아버트 소령이 육군 무관의 라이카 카메라로 찍었고, 무관사무실 요원에 의해 현상 인화되었다”(월간 <말> 2000.2. 김종민 제민일보기자).

결국 이같은 미군 기밀문서가 입수됨으로써 한국전쟁시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뒷받침된다. 대전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형무소학살사건 진상조사단’(단장 김용우)을 구성해 현재 증언채록과 현장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형무소와 부산형무소 학살 사건은 10년 전인 1990년 봄 필자가 학살 현장과 생존자들을 추적해 양민학살 르포집<이대로는 눈감을수 없소>에 기록한 바 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은 50년 7월 하순 경산군 압량면 평산리 뒷산 코발트 광산에서 학살된 후 지하 수직갱 속에 뼈곡이 시체가 쌓였고, 부산형무소 재소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경남 김해군 대동면에 자리한 신어산 자락의 철광석 폐광 터에서 학살된 뒤 그대로 묻혀 있다. 당시 필자는 두 지역 광산을 일부 파헤쳐 유골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두 형무소 측이 4.19 직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들 두 지역의 폐광에는 현재까지 각각 1천4백2구와 4천8백여구의 유골이 유족도 모른 채 처박혀 있는 셈이다. 이들 정치범의 유족은 대개 제주 4.3항쟁 행불자들, 여순사건 행불자들 및 남한 각지에서 해방 전후에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에 가담했다가 이승만 정부에 피검된 혈육을 둔 국민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우선 유골도 건사하지 못한 채 한맺힌 세월을 살아온 피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무도 모르게 50년간 방치된 피학살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 4.3 연구소, 여수사회문제연구소, 순천 참여연대, 대전참여연대 등 각지의 시민단체들이 형무소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해서 전국적인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 다. 11사단·휘하 병력에 의한 집단 양민학살사건

##### 1) 산청 함양 거창 양민학살 사건

한국전쟁의 전선이 중부지방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195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동안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지역 자연부락 주민 1천4백24명이 공비토벌대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가해 부대는 당시 영호남 지역 산악에 온 거한 빨치산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주둔했던 국군 11사단(사단장 최덕신)9연대(연대장

오익경)3대대(대대장 한동석)였다. 이 사건은 1993년까지만 해도 세간에 거창양민학살 사건만 알려져 있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2월8일부터 11일에 걸친 3대대의 가공할 양민 사냥 참극 가운데 후반부 이를에 걸쳐 자행한 거창군 신원면 주민 7백19명 학살사건만이 40여년간 이 사건의 전부인 것처럼 축소되었던 것이다. 2월8일부터 9일까지 이를에 걸쳐 이 부대가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유림면 주민 7백5명을 학살한 사건은 고스란히 잘려나갔던 셈. 결국 현지 유족들과 일부 언론이 93년4월 3대대의 작전경로를 따라 가위질당한 양민학살의 앞부분을 복원하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뒷받침함으로써 거창사건은 ‘산청 함양 거창양민학살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당시 3대대는 이들 지리산 지역 자연부락 주민들을 대량학살한 후 상부에 공비토벌 숫자로 보고했다.

우선 2월8일 아침 지리산 줄기에 자리한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부락에 들이닥친 3대대 1중대 병력은 이마을 40가구에 불을 지르고 가축을 약탈하는 한편 놀라 뛰쳐나온 남녀노소 부락민 1백23명을 마을 앞 골짜기에서 집단 총살했다. 학살을 마친 부대는 이어서 아랫마을인 방곡리로 들이닥쳐 역시 같은 방법으로 72가구에 불을 지르고, 마을 주민 2백10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를동안 이 부대가 산청 함양 지역에서 초토화시킨 자연부락은 모두 7개였다.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 점촌 부락과 자혜리의 상촌 하촌, 화계리의 와계 화산 주상 부락, 그리고 인접한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손곡 지곡 부락 등이었다. 모두 7백 5명의 주민을 집단학살한 3대대 병력은 2월9일 산악길 50리를 행군해 이를날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부락에 들이닥쳤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청연부락 학살에서 주민 70여명 전원이 희생되었다. 이어서 이 부대는 인근 와령리와 대현리 마을 주민 1백여명을 속칭 탄량골자기로 불러내 총살했다. 탄량골 학살을 마친 3대대 병력은 이어서 와룡리 과정리 주민 5백여명을 면소재지가 있는 신원초등학교에 수용한 뒤 이를날인 2월11일 근처 박산 골짜기로 끌고 가 집단학살했다.

이같은 양민학살이 거창 사건으로만 축소된 채 세상에 알려진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들 3개 군 지역 학살 현장은 사건 후 한동안 군경의 삼엄한 통제 속에 외부인 출입이 일절 금지되었기 때문에 학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51년 6월 하순께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 내려와 있던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묵씨에게 “당신의 지역구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에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신의원은 거창을 찾아 거창경찰서 사찰주임으로부터 신원면 학살 사실을 전해듣고 3월29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를 폭로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3대대의 만행은 거창 학살로만 축소된 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51년 4월6일 국회 조사단이 거창 현지로 떠나자 당황한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

은 조사단이 지날 길목에 공비로 위장한 군병력을 배치해 총격을 가해 결국 국회조사단은 도중에 회귀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이승만 정부는 곤경에 처했다. 결국 사건 발생 5개월만인 51년 7월27일 정부는 3대대의 양민학살 사실을 거창군 신원면만으로 축소한 채 지휘관들을 법정에 세웠다. 당시 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재판부(재판장 강영훈)는 거창사건 최고 책임선으로 오익경 9연대장을, 국회 조사단 방해 사건 책임은 김종원계엄민사부장 선에서 매듭지었다. 김종원 징역 3년, 오익경 무기, 한동석 징역 10년이 당시 형량이었다. 그러나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년후 줄줄이 특사로 풀려나와 다시 군에 복귀했다.

철옹성같아만 보인던 이승만 정부가 60년 4월혁명으로 붕괴되자 피학살 유족들의 한은 견잡을 수 없이 분출되었다. 거창지역 유족들은 60년5월11일 학살 당시 주민 선별작업을 맡았던 박영보 면장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학살 현장에서 살기 위해 군경가족이라고 손든 주민들에게 박면장이 ‘당신이 무슨 군경가족이냐’며 떠밀어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기에 유족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때 박면장이 사과를 거절하고 도망치자 흥분한 유족들은 그를 사로잡아 생화장시켜버렸다. 이 생화장 사건은 다시 한번 거창사건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 그러나 이듬해 일어난 5.16쿠데타로 이 지역 유족들은 18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구속되었다. 산청 함양지역 유족들도 국회에 진정서를 낸 행위가 포고령 위반이라 하여 2명의 유족 대표가 구속되었다. 합동묘지는 현병들에 의해 산산히 파헤쳐졌다. 거창 사건 유족들은 이후 피학살 양민을 ‘두번’ 학살한 역대 군사정부에 맞서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다. 산청 함양 유족들 역시 87년 6월항쟁 이후 유족회를 재구성해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이지역 피학살 유족들의 요구는 김영삼 정부 들어 빛을 보았다. 한국전쟁시기에 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첫 삽은 96년 1월 국회에서 법률 제5148호로 제정되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재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집단 양민학살은 산청 함양 거창 3곳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당초 거창군 신원면 사건만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93년 이후 산청 함양 사건이 거창사건과 맞물린 단일 사건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유족들이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거창사건 등’이라는 문구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공포된 후 현재 산청 함양 거창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지원단이 행자부에 편성되어 있다. 위령사업은 묘역 부지 마련과 단장, 추모탑 건립 및 배상 작업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 거창사건에는 1백40억원, 산청 함양 사건에는 1백억원의 정부 예산이 책정되어 연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결국 비슷한 시기에 국

군에 의해 발생한 뒤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집단 양민학살사건의 해결에는 이 법률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49년12월의 문경양민학살사건과 이엇 다를 함평 나주 양민학살 사건이 그런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사건을 법률 제5148호에 근거해 해결하기에는 법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른바 문미정부에서 물꼬가 트인 양민학살 상처 치유작업은 국민의정부 들어오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 2) 함평 양민학살사건

산청 함양 거창 양민학살과 비슷한 시기에 역시 11사단 휘하 병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 양민학살 사건이다. 50년 12월6일과 7일, 51년 1월 12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일대 자연부락 주민 5백24명이 주둔군에 의해 집단학살당했다. 주민을 학살한 부대는 11사단20연대2대대5중대였다. 학살은 대부분 권준육 대위가 인솔하던 5중대 병력이 자행했다.

당초 5중대는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불갑산 일대에 퇴로를 차단당한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이지역에 주둔했다. 불갑산 외곽을 잇는 교통 요지 문장면에 중대본부를 설치한 5중대는 공비토벌 대신 자연부락 주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으로 작전을 전개했다. 5중대의 이런 행위는 당시 군당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던 토벌작전과 상반된 것이었다. 즉 당시 군의 공식 명령은 ‘부락의 양민들은 안전지대로 소개하고, 농작물은 공동작업으로 수확케 하며 아군의 통신망과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1사단의 다른 예하부대의 만행(삼청 함양 거창 양민학살)과 마찬가지로 5중대도 양민은 학살하고, 농작물은 전부 불태웠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50년 12월6일 첫 양민학살은 자행되었다. 나흘 전 빨치산과의 전투에서 부대원 2명을 잃은(이 2명의 군인 희생이 복갑산 토벌작전 수행 중 군 희생자의 전부였다) 5중대는 이날 전투지역 인근에 있는 나산면 동촌리와 장교리 부락 주민 70여명을 불러내 마을 앞 논두렁에서 총살했다. 이날의 만행은 군인 경찰 가족까지 학살할 만큼 무차별적이었다(함평양민학살 진상보사보고서-함평군 의회, 1997).

이튿날인 12월7일 5중대는 다시 월야면 월악리 지면 내동 순촌 송계 괴정 성주 동산 등 7개 부락 주민 1백30명을 속칭 ‘남살뫼’로 불러내 집단 학살했다. 당시 공비토벌 업무를 보조하던 방위군 소대장(정병오씨)마저 권준육 대위의 권총에 사살될 만큼 광기 어린 학살극이었다. 지금도 현지 주민이 남살뫼학살이라 부르는 이 참극의 현장에 달려가 권대위에게 무고한 양민학살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증언하는 당시 이계필 월야 지서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5중대장은 아무런 심사도 기준도 없이 단지 부락에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총살했다. 남살뫼에 모인 5백여 주민을 다 학살하겠다는

것을 내가 어린이와 노인만이라도 빼자고 울면서 하소연해 겨우 목숨을 구해줄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양민학살이었다. 정부가 조사를 한다면 그 날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하겠다”.

남살피 학살 사흘 뒤인 12월 10일 5중대는 나산면 외치리에 들러 마을 주민 21명을 뒷산 공동묘지로 끌고가 학살했다. 간밤에 빨치산이 내려와 마을 앞 도로를 파헤쳤는데 그것이 이마을 주민 소행이라며 학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학살이 있고 나서 40일 뒤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에서 또한 차례 양민학살이 일어났다. 이마을은 소개 eotikd 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평지로 나갔는데 뒤에 들어온 8중대 병력이 마을 주민에게 그냥 들어가 살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이 귀가한 뒤 다시 들어닥친 5중대는 명령을 어겼다며 주민들을 전부 불러내 산기슭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학살했다. 5중대와 8중대의 평통계임식 명령에 우왕좌왕하다 결국 집단학살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5중대 주둔 기간 2개월 동안 월야 해보 나산면에서 집단학살된 주민들은 5백24명. 가옥 소실은 1천4백54호에 이르렀다. (1960년 4대 국회 양민학살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보고 자료). 함평 양민학살 사건은 4.19 직후 국회에서 진상조사반을 파견해 끔찍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행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역시 이듬해 일어난 5.16쿠데타와 계속된 군사정권으로 이 사건은 철저히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오랜 통한의 세월을 딛고 유족이 뭉친 때는 1991년. 이들은 역대 정권에서 국회와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식으로 줄기차게 사건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민선 지자체 시대가 되자 함평 군청과 함평 군의회에서도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전담부서까지 두고 4년간 조사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생존해 있는 학살 가해 부대원 4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들로부터 양심고백문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5중대장의 잔혹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진상조사를 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함평 군청측은 사건 당시 5중대의 행적을 기록한 전투 상보를 입수함으로써 사건 배경과 규모를 확보했다.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을 기록한 이른바 ‘대보름작전’에 관한 전투상보에는 2개월간 이일대에서 벌인 군 작전으로 공비 1천 5명을 사살하고 아군 피해 2명이라고 적혀 있다. 결국 5중대는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후 이를 모두 공비토벌 숫자로 상부에 보고했던 셈이다.

11사단 일부 예하 부대의 양민학살은 군 내부에서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국전쟁 시기에 현병사령관을 지내고 훗날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최경록씨는 최근 필자와의 통화에서 11사단이 집단양민학살을 벌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11사단은 무리하게 전과를 올리는 데 급급해 여자를 겁탈하고 소를 다 잡아먹고 양민을 죽인 뒤 상부에 공비를 소탕했다고 보고했다. 그때 최덕신의 11사단에는 이동병이 없었다. 전

원이 1계급 특진했기 때문이다”.

함평 군의회는 4년여동안 자체 조사한 진상 조사 자료를 지난 97년 책자로 엮어냈다. 여기에는 당시 학살에 가담한 5중대원들의 양심 고백과 월야 지서장 및 국방부 정훈국 선무공작대장조차도 경악했던 함평 양민학살 현장 회고 등도 담겨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제정한 거창사건 등과 관련한 특별법에 함평 사건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함평군은 1999년 군비와 전남 도비를 지원받아 일단 사건 현장에 위령탑 건립 부지를 마련해두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서도 함평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3.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보복 양민학살 사건

앞서 살펴본 양민학살들이 한국전쟁기에 이루어진 양민학살의 전부는 아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시기에 군인 경찰 우익단체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벌어졌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양민학살 사건들은 정부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학살 사건과 아무 기준도 없이 남녀노소의 주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역대 정부의 탄압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종전 후 50년이 다되어가는 오늘날까지 유족들이 뭉쳐서 정부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의 다른 양민학살이 대규모 집단학살과 차이가 있다면 일부 지휘관이 청장년 중심으로 선별하여 나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수명 또는 수십명 단위로 학살을 벌였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물론 그런 학살이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하나만으로 인명을 마구 해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임은 분명하다.

개전 초기 군 경 우익단체가 대규모 양민학살을 벌이고 빠져나가자 이후 인민군이 진주한 지역에서는 보복학살의 악순환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개전 초기에 보복 학살은 현지 실정을 모르는 인민군보다는 보련 학살사건 등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자행되었다. 그 대상은 미처 피난가지 못한 군경이나 그 가족, 대지주와 우익 단체 관련자 등이었다. 물론 인민군도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에 가담했다. 경남 진주 지역에서는 ‘반동분자’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치보위국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 자위대와 민청 여맹 등 사회단체가 가세했다. 주요 대상자는 악덕 지주, 경찰, 공무원 등과 전향 후 보련에 가입해 좌익 색출에 앞장선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숙청은 자기네 법령을 기준으로 ‘인민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지에서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 즉결 처분식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다. 1973년 대검찰청 수사국이 발행한 <좌익사건 실록>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는 50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 보련 학살자 유가족 70여

명이 경찰 5명을 학살했다. 8월4일에는 경남 사천군 인민위원회 치안대원이 순경 1명을 학살했다. 같은 군 용인면에서는 인민군이 9월1일 우익인사 3명을 학살했고, 다음날에는 이지역에서 치안대원이 주민 1명을 학살했다.

전북 지방에서는 보련 학살에 대한 보복학살이 더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서는 50년 7월20일 지서가 후퇴하고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자 108명의 우익인사와 25명의 경찰, 150명의 군인과 920명의 일반인에 대한 잔혹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다. 공무원 마을 이상, 반공 유지 군경 가족 등이었다(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특위 보고서 1994. 161쪽). 또다른 학살은 인민군 후퇴기에 일어났다. 인민군 치하의 무주군 내무서원 30여명은 무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경찰 대지주 우익 인사 등 84명을 끌고 대전 방면으로 후퇴하다가 50년 9월26일 무주에서 7킬로미터쯤 떨어진 용포리 하늘바위에서 학살하였다. 이 가운데 15명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전원 회생되었다. 임실에서는 군청 뒤 방공호에 우익 인사 3백10명을 몰아넣고 후퇴하던 인민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무려 2백95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시기 좌익에 의한 가장 참혹한 보복 양민학살은 전북 옥구에서 발생했다. 옥구군 미면 인민위원장 김행규 등은 50년 8월2일 미면 면장 등 7명의 지역 인사를 반동분자로 규정해 학살했다. 이들은 그 후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감금해둔 우익인사 5백74명을 이틀동안 집단학살했다(이상 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 진상 실태 조사 특위 보고서 204~254쪽). 90년대 초반 전라북도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에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학살이 1천2백2명, 군경 및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이 3천2백18명으로 나타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경기도 고양군 금정굴 양민학살도 대표적인 보복 학살의 악순환 사례이다. 금정굴 양민학살은 50년 9월20일경 우익계 비밀 결사 단체인 태극단 동지회원 38명을 후퇴하던 인민군 내무서에서 처형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곧 유엔군과 국군이 들어오자 이제는 치안대 경찰 태극단 등에서 대대적인 좌익 색출에 나서 1천여명의 남녀노소 주민을 잡아다 금정굴에서 학살했다. 지난 95년 10월6일 유족들이 금정굴 유골을 발굴한 결과 지하 15미터에 이를 대까지 유골 수가 1천 5백여점이 나왔고,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온전한 형태의 두개골은 부녀자와 어린이 유골 등 모두 1백50여점이었다.

인민군에 의한 대규모 학살 사건의 표본은 역시 교도소에서의 학살이라 할 수 있다. 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힌 남한 각지의 인민군은 후퇴하면서 교도소에 불잡아 둔 수감자들을 대량학살했다. 대전형무소의 경우 9월28일 밤 수감자 5천5백여명 중 1천5백57명을 학살했다고 한다(<한국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 정근식. 1992). 또 광주형무소에서는 9월28일 2천여 수감자 중 대지주 현준호씨와 미군정기 전남 지사를 지낸 최영옥씨 등 우익인사 70여명을 골라 화순 널릿재 터널에서 학살했다. 목포에서는 9월 말

후퇴기에 형무소가 넘치자 우익계 인사 3백명을 분리해 목포시 연동에 있는 미곡창고에 가두고 집단 학살했다.

## II. 집단 양민학살의 책임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제주도에서의 주민 집단학살, 문경양민학살사건 등은 물론 개전 초기에 저질러진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사건과 형무소 학살사건, 그리고 11사단이 영호남 지역에서 저지른 주민 집단학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앞서 문경양민학살 사례로 보듯이 이승만 정부는 신성모 장관을 학살 현지에 파견하고서도 관계자 문책과 응분의 조치는커녕 공비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정권에게 전쟁 시기에 그 많은 학살에 대해 엄금하는 조처를 취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결음 더 나아가 대규모 양민학살의 경우에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 정부 최고위층에서 지시하고 묵인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전 직후 행한 중요 정책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였다. 전쟁 직후 자기는 대전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곧장 부산으로 피할만큼 자기 안위만 절대적으로 생각한 이승만이 다른 모든 공직자와 국민에게는 국군이 북진중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기만적인 방송을 내보낸 뒤 대전에서 처음 취한 조치가 자국민을 대량살상토록 길을 터준 이 특별조치령 공포였다. 이 법을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때부터 시작된 보련학살이나 형무소 학살, 11사단의 양민학살이 마구잡이로 자행될 소지가 열려있었다.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이 이 특별조치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다만 과거 행적을 문제 삼거나 그 가족이었다는 이유, 여기에 각 지방마다 있을 수 있는 사감까지 얹혀 무법천지가 펼쳐졌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나 군대 경찰과 정부의 지원을 받던 우익 단체들이 행한 모든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이승만 정부에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두둔하고 조장, 비호하기까지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며 초법적이 양민 집단학살이 벼젓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 시기의 모든 끔직한 범죄들은 이후 역대 군사정부에서 극우 반공이데올로기가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당화되거나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해방 전후에 그같은 야만적이고 범죄적인 학살이 있었기에 한국사회는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더 강력한 극우 반공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초토화작전은 문명세계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명령한 사령관은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외였다. 제노사이

드(주민 집단학살)는 1945년 8월 뉘른베르그 국제재판소 현장, 1946년 2월과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결의해 1948년에 발효된 제노사이드 관련 협약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범행 일시에 관계없이 소추가 가능한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해방과 건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내 정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에도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이 비껴갈 수는 없다. 주민 집단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맹아는 미군정기에 마련되었다. 주한미군은 친일파를 적극 등용했다. 미군정기에 친일파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이 물려간 자리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미군정에서는 경찰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제보다 더 경찰기구를 중앙집권화 했는데 해방 후 도지의 권한 아래 있던 도경찰부를 독립시키고 경찰 행정권을 중앙에 귀속시켰다. 미군정은 경찰에 고성능 무기와 자동차 라디오 전화망 등을 집중 지원하여 미군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립적인 편에 섰던 인사와 단체들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친일파를 중심으로 한 극우 정치세력은 이 지원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 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그대로 상속되었다. 미군은 이들을 통한 테러를 조장하였다. 미군정과 주한미군은 테러가 빈발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4군단의 G-2보고서 등 여러문서에 테러를 상세히 기록했지만 미국의 법치주의와 모순되게도 테러를 막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미군정에서는 검찰 경찰이 테러에 관련이 많은 청년단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 청년 학생단체는 미군정청의 구호물자와 배급품을 지원받았다(<조봉암과 1950년대>하, 683~684쪽).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은 일정한 주준 이상의 모든 한국군 부대에 배속되었다. 제주 4.3사건에서도 그랬고, 여순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재미 학자 이도영박사가 미국립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대전형무소 학살현장 사진도 미군이 찍었고, 사진 속에 학살을 지켜보는 미군이 있다. 이것은 곧 해방 이후 한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문명적 대량 학살 사건은 대부분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야만적 대량학살과 불법 처형에 대해 미국은 자기네가 세계에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는 대로라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공론화된 노근리 피난민 학살사건과 왜관교 폭파 사건 등 수많은 학살사건이 보여주듯이(북한 지역에서의 학살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들도 야만적인 양민 학살의 한 축을 담당했다. 물론 50년 세월이 흘러 당시 노근리 학살에 가담한 미군들은 만행을 솔직히 털어놓고 사죄의 마음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한국군경측 학살 가해자들의 양심과 비교할 때 문명의 두께를 실감케 한다.

### III. 양민학살 사건이 남긴 교훈과 과제

한국전쟁 전후에 집단 학살을 당한 피학살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두번 학살당했다'는 말을 강조한다. 그들에게 공포스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말은 학살 이후 유골이라도 수습해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위령하고자 했던 유족의 노력이 다시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데서 연유한다. 학살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의 공포정치 아래서 숨죽인채 한뼘한 세월을 보내던 피학살 유족들은 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비로소 대대적인 유골 발굴 작업과 진상규명 운동에 나섰다. 당시 국회에서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소극적이나마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일환으로 60년 5월 제4대 국회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곽상훈)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는 자유, 민주 양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을 전국에 파견했다. 겨우 11일이라는 짧은 현장조사만으로도 국회 조사반은 전국 42개 지역에서 8천여명에 달하는 양민학살이 벌어졌음을 확인하고, 새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이문제에 미적미적 하는 가운데 이듬해 일어난 5.16 쿠데타로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군인들이 주도해 일으킨 쿠데타였기 때문에 5.16세력은 진상규명운동을 벌인 피학살 유족들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일삼았다. 4.19 직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성되었던 유족회는 51년 봄부터 현병대에 의해 철퇴를 맞았는데 진상조사 작업을 벌인 유족 대표들은 대부분 '혁명포고령 위반죄'로 구속되었다. 아울러 조사 기록은 모두 압수했으며 학살된 후 10년만에 발굴해 합장한 묘역들은 전부 파헤쳐지고 유골도 없애버렸다. 두 번 학살당했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탄압 속에 피학살 유족들은 이후 극심한 피해의식에 빠져들었다. 역대 군사정권에서 연좌제에 걸리고, 극심한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되어 살아가던 이들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쓰다듬으며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세월 지난한 투쟁을 벌여 특별법을 엄어낸 제주 4.3 유족과 거창 산청 함양 유족, 그리고 아직 정부가 처리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0여년동안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문경과 함평사건 유족들은 예외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가공할 양민학살의 혼적이 도처에 널려 있고, 이 문제가 국민 내부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렇다 할 해결 노력이 없었던 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세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을테지만 극우 반공체제라는 현실세계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교수는 그의 저서 <조봉암과 1950년대> 하권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등 우리사회 여론 주도층의 다수는 (양민학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이중인격자였고 한국형 지킬박사와 하이드였다... 주민 집단학살에 태연하고 일부는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극우 단정세력이나 대중의 상당수가 일찍이 서유럽에서 발전한 근대적 인간관이

나 사회관, 국가관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라고 분석했다.

물론 반세기에 이르는 은폐와 탄압의 질곡을 딛고 몇몇 지역 유족이 일어서기까지는 87년 6월 항쟁이 분수령이 되었다. 또 제주도와 함평 등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계, 지자체(지방의회 등) 등에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점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피학살 유족들은 유골도 전사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 후 민주주주와 인권사회를 가로막아온 횡일적 극우 반공체제가 전쟁 시기의 광범위한 야만적 학살을 토대로 성립되었다고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온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바로 그런 기제(학살, 사찰, 협박, 납치, 고문, 은폐, 감옥)를 허물어온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성과 양심은 필연적으로 반문명사회를 잉태시킨 원죄(대량학살)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사태가 닥칠지라도 한국전쟁 시기와 같은 야만적 상황이 되풀이되게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한 교훈은 멀리 외국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90년대 들어 역대 정부는 대북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역시 분단의 책임 논쟁 보다는 서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여가고 있다. 오랜 세월 국민을 지배해온 대북 적개심은 차츰 동포의식 고취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과 더불어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 못지 않게 남한 내부에서 깊은 상처 치료를 호소하는 손길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양민학살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양식있는 단체들이 나서는 일은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1.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베개(1990)
2. 김삼웅, 해방전후 양민학살사(1996)
3.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1999)

##### 자료집

4.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 피해진상조사실태 보고서, 1997.12
5. 전라북도의회,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보고서, 1994
6. 문경양민학살 피해학살자 유족회, 아! 통한 45년, 1994

##### 신문·잡지사

7. 김태광, '해방후 최대의 양민참극 보도연맹사건' 월간 <말>, 1988.12

8. 김태광, 속 '보도연맹'사건 월간 <말>, 1989.2

9. 정희상, 은폐 38년 산청, 함양 양민학살, 월간 <말> 1989.6

10. 정희상, 부산·진영·충무 일대 양민참극, 월간 <말> 1989.7

11. 정희상, 7백 양민학살 거제도의 통곡, 월간 <말> 1989.8

12. 정희상, 국방군 문경양민대학살, 월간 <말> 1990.3

13. 노가원, 대전형무소 4천 3백 명 학살사건, 월간 <말> 1992.2

14. 오연호, 미군의 충북영동양민 3백 여명 학살, 월간 <말> 1994.7

15. 정희상, 거창사건 축소·은폐진상, <시사저널> 1993.6.3

16. 정희상, 미극동군 사령부 극비문서 공개, 문경양민 86명 국군이 학살했다, <시사저널> 1989.11.19

17. 정희상, 한국전쟁 42개 지역 양민학살, <시사저널> 1999.11.4

18. 김성환·심규상·김종민, 입체추적/서울·대전·대구 6.25 양민학살의 진상 '누가 이들의 죽음에 책임질건가', 월간 <말> 2000.2

##### 기타자료

19. 국회 제35회 임시회의 제 42차 본회의 속기록, 1960.6.21

20. 육군본부편찬, 공비토벌사, 단기 4287년 3월

21. 대통령령 제14970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96.4.6 공포

# 국제법상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의 귀속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조교수)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 국가기관의 행위
  2. 한국전쟁과 한미행정협정상 '공무집행'의 개념
- III.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
  1. 국제법위원회 조문초안 제8조 - 국가의 지시, 감독, 통제
  2. 테헤란사건과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승인
  3. 니카라과 사건과 '효율적 통제' 기준
  4. 타디치 사건과 '포괄적 통제'
  5. 예외적 상황에서의 국가권력의 행사
- IV. 외국주둔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
  1. 국제법위원회 조문초안 제9조
  2. 국제법상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의 책임
    - 가.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7조 - 원조와 지원
    - 나.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8조 - 감독과 통제
- V. 맷는 말

## I. 들어가며

최근 민주화의 일정한 성과를 거둔 한국사회에서는 해방후 저질러진 수없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진상과 책임의 규명이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군정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광주항쟁중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그 피해의 심각성, 범죄성, 반인륜성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여로 '중심적 문제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다.<sup>1</sup> 여전히 이러한 학살의 전모가 가려져 있는 사정 속에서 명확한 진상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성과는 무엇보다 이러한 과거인권침해행위를 다루기 위한 올바른 틀과 법 적용에 달려있다.<sup>2</sup> 민간인 학살은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의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 형사책

1) 예컨대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오연호, 노근리 그후, 월간 말(1999); 이영희, 베트남전쟁: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광주항쟁·민족통일·한미 관계, 한길사(1993).

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이러한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구조의 개혁문제와도 맞물려 인적·제도적 청산을 요청한다.

민간인 학살행위와 그 책임에 관하여는 다양한 국제법의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학살이 외국군대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저질러진 경우와 자국군대가 외국에 파병되어 그 나라의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자국민에 대하여 벌어진 경우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전쟁중에 벌어진 민간인학살의 경우 전쟁중에 지켜져야 할 교전법규 또는 인도법규(*jus in bello*)의 위반<sup>3</sup>이 문제됨과 아울러 애당초 전쟁 자체를 일으킨 것, 즉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항한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도 문제된다(*jus ad bellum*)<sup>4</sup>.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내전의 경우 내란 또는 반란행위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sup>5</sup> 국제법차원에서는 아직 이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고 내전 중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과 같은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평화시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전쟁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강조된다.<sup>6</sup> 더욱이 민간인학살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 위반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학살

- 2) 다른 나라의 이러한 작업으로는 예컨대 Neil J. Kritz ed., *Transitional Justice*, 3 vol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참조.
- 3) 이러한 국제협약으로는 Adam Roberts & R. Guelff eds.,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Clarendon Press (1989); 김정건 외, *국제조약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751-924쪽 참조.
- 4) 국제연합(UN) 현장, 조약 제1059호(1991.9.24), 제39조, 제51조 참조. 침략(aggression)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유엔총회 결의 3314호(XXIX), 1974.12.14, 부속 '침략의 정의' 참조.
- 5) 예컨대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12·12, 5·18 사건').
- 6)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반 보вен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submitted by M. Theo van Boven, UN Doc. E/CN.4/Sub.2/1993/8, 2 July 1993, para. 137; 개정본으로는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UN Doc. E/CN.4/1997/104, 16 January 1997, Appendix)과 루이 주아네의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final report prepared by Mr. L.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resolution 1995/35, UN Doc. E/CN.4/Sub.2/1996/18, 20 June 1996; 우리말 옮김은 김은영,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이달의 민변, 96년 9월호, 72쪽)이 있다. 또한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r. M. Cherif Bassiouni,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43, UN Doc. E/CN.4/1999/65, 8 February 1999 참조.

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를 구성하여 개인이 국제형사책임을 지게된다.<sup>7</sup>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이러한 개인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도 뒤 따른다.

주권자인 국가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테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다.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제법의 규범성과 현실성은 한낱 이상주의자의 꿈에 불과하게 된다. 국내법의 분류상 시민법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민법전처럼 국제법에는 국가의 책임문제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성문법전, 즉 조약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국제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맡겨지게 된다.<sup>8</sup> 1949년 유엔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국가책임문제를 법전화하기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고 1956년이래 줄곧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1996년(48차 회기)에는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을 잠정적으로 채택하였다.<sup>9</sup> 이에 따르면 국제법위반행위가 어느 국가에게 귀속되고 위법성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sup>10</sup> 국가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일반적으로 배상,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책임자 징계와 처벌 등의 의무를 지게된다.<sup>11</sup> 최근에는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기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 자체의 국제범죄 또는 국가범죄(State crimes)를 구성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sup>12</sup>

- 7) 예컨대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 183/9, 17 Jul. 1998, 제6-8조;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 제1382호 (1948.4.9 유엔총회 채택, 1951.1.12 한국에 대하여 발효). 배상에 관하여는 피해받은 개인이 직접 국가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제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 8)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조약 제1059호 1991.9.24), 제38조 1항은 재판소로 하여금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적용하여 분쟁을 재판하도록 한다.
- 9) 초안문은 Report of the ILC on the work of its forty-eighth session, 6 May to 26 July 1996(이하 '1996년 ILC 보고서'), UN Doc. A/51/10 (1996), ch.3, D. 조문초안 제1부의 번역으로는 김석현 역,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1부) - 국제책임의 연원', 국제법평론 통권 제6호 (1996-I), 363쪽. 또한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전정증보판, 1998), 193-194, 200쪽 참조. 이 초안은 현재 유엔 총회의 제6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법위원회는 초안의 제2독회를 하고 있다. 1999년 ILC 보고서, UN Doc. A/54/10(1999), paras. 49 이하 참조.
- 10) 국제법위원회의 조문초안은 이러한 사유를 동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 불가항력과 우연한 사건, 위난(危難, distress), 긴급피난(state of necessity), 자기방위(self defence)로 나누고 있다. 제29조-제34조.
- 11) 조문초안, 제42-45조.
- 12) 조문초안, 제19조, 제51-53조. 예컨대 First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by Mr. James Crawford,

이 글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에 대한 적절한 진상규명의 틀을 세우고 법적 평가를 돋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책임의 귀속문제를 고찰한다. 어떠한 경우에 민간인학살이 국가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학살행위로 발생하는 실체적인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부과하는 국가의무에 대한 논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학살사건들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국가책임의 귀속문제를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본 다음 다른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는 자신의 모든 국제위법 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sup>13</sup> 다시 말하여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에 귀속되고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면 그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sup>14</sup> 특정 행위의 국가귀속과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sup>15</sup> 국내법상 적법한 국가의 행위일지라도 국제법상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16</sup>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국가행위가 인정되는가?

### 1. 국가기관의 행위

국가는 법인이므로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책임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490/Add.1, 1 May 1998; Add.2, 5 May 1998와 Add. 3, 11 May 1998(이하 '1차 보고서') 참조.

13) 조문 초안 제1조. 초안 제19조에 따르면 국제위법 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제불법 행위(international delict)가 된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침해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에 관해서는 1978년이래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초안을 마련중이다.

1999년 ILC 보고서, UN Doc. A/54/10 and Corr.1 & 2 (1999), paras. 598-608 참조.

14) 조문초안 제3조.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피해국의 특정이 국제위법 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1차 보고서, UN Doc. A/CN.4/490/Add.4, 26 May 1998, paras. 109-130 참조.

15) 1차 보고서, UN Doc. A/CN.4/490/Add.5, 22 July 1998, para. 159.

16) 조문초안 제4조. 이에 대한 주석으로는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3, vol. II, 184-187쪽 참조.

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sup>17</sup> 국가의 국제책임 문제에 있어서 누가 국가기관인가는 국내법에서의 취급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sup>18</sup> 이들이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의 어느 기능을 수행하는지 또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19</sup> 또한 국가조직의 일부가 아니지만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준(準)국가기구(para-statal entities)가 그러한 자격으로 한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sup>20</sup> 국내법상 합헌성이 인정되지 않은 쿠데타, 혁명 등으로 집권한 이른바 '사실상의 정부'의 행위도 국가가 책임을 진다.<sup>21</sup>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가 국내법상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거나 직무에 관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sup>22</sup> 한편 "행위가 공무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실상 사적 개인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국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sup>23</sup> 실제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민간인 학살을 해도 좋다는 법규를 제정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국가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국내 형법이나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행위가 국가기관의 자격(capacity)에서 한 행위이고 사인으로서 한 것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sup>24</sup> 이러한 외견책임(apparent responsibility)의 문제는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에 있어서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별에 있어서 행위의 "공무로서의 성격을 구실로"(under cover of their official character),<sup>25</sup> "그 지위 때문에 쓸 수 있게된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된 행위든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sup>26</sup> 한 것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

17) 조문초안 제5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원칙의 관습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Difference Relating to the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1999, para. 62.

18) ILC Yearbook 1973, 191-193쪽; 1차 보고서, paras. 160-167.

19) 조문초안 제6조, 제7조 1항. 1차보고서, paras. 173-181, 190-1 참조.

20) 조문초안 제7조 2항. 앞의 보고서, paras. 192-3 참조.

21) 조문초안, 제8조 (b), 제14조, 제15조. ILC Yearbook 1975, vol. II, 99-106쪽 참조.

22) 조문초안 제10조. 또한 Theodor Mer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Unauthorized Acts of their Officials',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57), 85쪽. 이 원칙이 일 반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견해로는 예컨대 이한기, 국제법강의(신정판, 박영사, 1997), 582쪽.

23) Jean-Baptiste Caire Case (1929), French-Mexican Mixed Claims Commissio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 (1952), 531쪽; Annual Diges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ases 1929-1930, 146쪽.

24) 1차 보고서, paras. 238-243 참조.

25) League of Nations, Acts of the Conference for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held at The Hague from 13 March to 12 April 1930, Vol. IV, Minutes of the Third Committee (document C.351(c).M. 145(c).1930.V), 238쪽; 1차 보고서, para. 239에서 재인용.

어 미국·멕시코간 일반청구권위원회는 멕시코 군인들이 가담된 폭도들의 미국인 살해사건에서 이 군인들이 고위관리로부터 미국시민들을 보호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멕시코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권한과 지시에 반한 불법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인명침해를 가하거나 함부로 파괴 또는 약탈을 저지르는 병사들은 언제나 상급기관에 의해 규정된 모종의 규칙에 복종함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병사들이 지시에 위반하여 저지른 어떤 행위라도 언제나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져야만 한다면 그러한 범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국가)책임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sup>27</sup> 이와 같이 특정한 행위가 공무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문제된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되풀이되어서 국가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틀림없고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sup>28</sup>

## 2. 한국전쟁과 한미행정협정상 ‘공무집행’의 개념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이 최근에 관심을 끌자 이의 해결을 놓고 어느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한미행정협정,<sup>29</sup> 즉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적용여부와 협정의 재판권 규정상 ‘공무집행’의 개념이 문제되었다.

이 협정은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와 손해발생에 대한 청구권을 두 나라의 국내절차에 따른 민·형사재판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협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미군의 범죄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형사재판권이 병존함을 규정하고 3항에서 “(2) 공무집행중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的 경우 미국에게 재판권행사에 대한 제1차적 권리(?)를 부여한다.<sup>30</sup> 민사청구권에 관한 제23조는 공무집행중의 행위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하여 처리

26) The Caire case, 앞의 주 23, 529쪽. 이 사건에서는 멕시코 장교들이 프랑스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못하자 병영으로 끌고가 사살한 것이 문제되었다.

27) Thomas H. Youmans (U.S.A.) v. United Mexican States, Decision of 23 November 1926, United States-Mexico General Claims Commissio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V, 116쪽;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1927), 571쪽.

28) 1차 보고서, para. 242.

2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 제232호(1966.7.9 서명, 1967.2.9 발효).

30) 예컨대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기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불평등한 SOFA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1999.11.3), 39쪽 참조.

방법을 달리 규정한다. 같은 조 5항은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경우 한국이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다시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제23조 11항), ‘전투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6항은 “대한민국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청구의 경우 한국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른 합의의사록(1966.7.9)에 따르면 ‘공무’의 개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 정의한다. 공무집행중의 행위인지는 미군 주무당국이 발행한 공무집행증명서로 사실상 결정되게 된다.<sup>31</sup> 미군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인의 재정에 맡기도록 한다(제23조 8항). 이와 같이 협정상 ‘공무집행중의 행위’인지에 따라 형사재판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절차가 달라지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행정협정이 한국전쟁중의 미군의 행위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은 1967년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이 문제는 1950년 대전협정에 따르도록 하였음을 주의하여야 한다(제22조 12항). 대전협정은 다시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exclusive jurisdiction)은 미국군법회의에 있다고 하여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배제하였다.<sup>32</sup>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중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제관습법과 제네바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sup>33</sup>의 경우

31) 김부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및 문제점’, 법과 사회, 제2호(1990), 153, 165쪽(“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으로부터 배제되는 공무집행행위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2)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 제1135호(각서교환으로 체결, 1950.7.12. 대전에서 서명, 1950.7.12 발효).

33)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조약 제211호, 제50조;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병자, 부상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조약 제216호, 제51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조약 제217호, 제130조;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조약

모든 체약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대전협정의 재판권규정이 이러한 국제범죄의 경우에도 한국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미국만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sup>34</sup> 또한 현행 행정협정 제22조 11항도 “한미상호방위 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sup>35</sup>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한국의 재판권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러한 무력공격의 상황에서 미군에 의한 전쟁범죄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전적으로 미국에 맡기는 것은 대전협정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문제이다. 이 규정은 전쟁범죄 등에 보편적 재판권을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에 비추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근리에서와 같은 한국전쟁 중에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학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도 한미행정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 제23조 13항은 협정의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고 한다. 이 규정이 미국의 배타적 재판권을 정한 것인지는 형사재판권과는 달리 명문으로 그려함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sup>36</sup> 대전협정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23조 13항이 협정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처리를 소급적으로 미국에 맡기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은 한국전쟁중의 미국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제218호, 제147조 (모두 1966.8.16 한국에 대하여 발효). 또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회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조약 제778호(1982.7.15 한국에 대하여 발효), 제85조 참조.

34) 한국전쟁중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지만 1949년 제네바협약을 포함하는 전쟁법 일반이 적용된다고 본다. Rosalyne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Documents and Commentary*,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91-193쪽; Sydney Bailey, *How Wars End: The United Nations and the Termination of Armed Conflict 1946-64*, vol.II, Clarendon Press (1982), 519-20쪽 참조. 최근 1907년 헤이그협약(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제2협약), 조약 제886호 (1903.3.17 가입서 기탁, 1986.8.8 발효))의 적용에 관하여 “헤이그협약은 그 적용범위가 교전국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데‘있기 때문에(제2조 참조) 교전국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노근리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김찬규, ‘노근리사건과 시제법’, 법률신문 제2853호(2000.1.17), 14쪽. 이 문제 역시 이 글의 범위를 넘으나 전시민간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음에 비추어 노근리 민간인학살 사건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Stefan Oeter, ‘Methods and Means of Warfare’, *The Handbook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Dieter Fleck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05, 108쪽 참조.

3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조약 제34호(1954.11.18).

36) 현 협정 체결전 미국의 ‘대외소청법’에 의한 주한미군청구사무소의 청구위원회에 관하여는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연구*, 도서출판 민 (1995), 205쪽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 중의 미군의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대전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을 놓고 한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는 관련 협정에 별다른 구속력이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sup>37</sup> 따라서 분쟁이 외교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와 같이 다른 일반적인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38</sup> 덧붙여 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한미 양국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으나 국제형사재판의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대전협정에 따르면 적어도 미군의 학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은 배제되지 않았으며,<sup>39</sup>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국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sup>40</sup>

이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전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군의 행위가 협정상의 ‘공무집행중의 행위’인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전쟁중 미국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미군들의 행위의 귀속문제는 행정협정상 공무의 개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협정상 ‘전투행위’의 개념 역시 한국전쟁중의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귀속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도 명백하다.<sup>41</sup> 앞에서 논의한 국제법원칙에 비추어 직무수행중의 행위인가의 판단은

37) 한미행정협정, 제23조 2항(중재), 제23조 10항(합동위원회의 조정), 제28조(합동위원회에서의 협의) 참조.

38) 예컨대 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김재원 옮김), 교육과학사 (1998) 참조.

39)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중 발생한 미국에 대한 특정한 유형의 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또한 그 자신 및 기타 일부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협정, 조약 제46호(1957.7.1 발효) 참조.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 초기에 한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229호(1967.1.16 서명, 발효).

40)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이에 관하여는 ‘노근리 진상조사…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진상규명인가’, 월간 로로 1999.11, 60, 62쪽 참조.

41) 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행정협정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전투행위의 특성상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손해(collateral damages)와 같은 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목은 전투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리는 통상적인 국제절차에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재판권은 한·미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석우, 앞의 책, 265-266쪽 (“전투행위에 부수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본협정상에서 별도로 그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는 법규 흥결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투 행

미국법이 아니라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sup>42</sup> 또한 관련 미군의 행위가 미국정부나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 덧붙여 미군의 학살행위는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적 행동으로 간주할 여지는 더욱 좁아지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III.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

#### 1. 국제법위원회 조문초안 제8조 - 국가의 지시, 감독, 통제

국제법상 국가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군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sup>43</sup> 국가는 국내법과 제도에 따르면 국가조직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 실체에 국가기능의 수행을 맡기기도 한다. 국가가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경우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론(異論)이 없다. 국제법위원회는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일 지라도 이들이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on behalf of) 행동한 경우에는 국가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44</sup> 다시 말하여 “어느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의 행동은 이들이 그 행동을 수행할 때 그 국가의 지시(instructions) 또는 감독이나 통제(direction or control) 아래 행위할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여겨진다.”<sup>45</sup>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과 사단이나 회사와 같은 법인도 포함한다.<sup>46</sup> 또한 국가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수락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도 국가행위로 인정된다.<sup>47</sup>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가 국가의 지시나 권한부여가 없이 한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위에 부수되는 청구의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조.  
42) ILC Yearbook 1975, vol. II, 61쪽.

43) 헤이그협약이나 제네바협약과 같이 전쟁규칙과 인도적 대우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전자’ 또는 전투원의 경우로 협약상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Fritz Kalshoven, ‘State Responsibility for Warlike Acts of the Armed Forces: From Article 3 of Hague Convention IV of 1907 to Article 91 of Additional Protocol I of 1977 and Beyon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0권 (1991), 827쪽 참조.

44) 조문 초안 제8조 (a). 제11조, 12조, 13조도 참조.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3-285쪽; 1차 보고서, paras. 221-220 참조.

45) 1998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위원회에서 잠정 채택된 제8조 본문, UN Doc. A/CN.4/ L.569, 3쪽.

46)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6쪽.

47) 1차 보고서, paras. 281-286.

국가에 귀속하는가, 즉 사실상의 국가기관(*de facto State organ*)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이 국가기관의 ‘전유물’만이 아니었던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테헤란사건과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승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의 희교혁명에 따른 미국대사관의 점거, 대사관 직원의 인질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이란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루었다.<sup>48</sup> 재판소는 국가의 기관이나 그 대리인이 아닌 학생들이 미대사관을 급습하고 52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삼은 행위에 대하여 이란의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이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임무가 부여되어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행위”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sup>49</sup> 그러나 이란당국이 나중에 대사관 점거와 인질의 구금을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점거를 풀지 말도록 명령까지 한 단계에 와서는 점거학생들은 사실상 이란의 국가기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sup>50</sup>

#### 3. 니카라과 사건과 ‘효율적 통제’ 기준

1986년 미국의 니카라과 내전 개입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 사실상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sup>51</sup> 이 사건에서는 특히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항하는 콘트라(contra) 반란군이 민간인 등을 살상한 것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먼저 미국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자금 제공, 조직, 훈련, 장비제공, 작전계획과 같은 지원행위는 내정불간섭 의무와 무력 불사용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였다.<sup>52</sup>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콘트라와 미국 사이의 의존, 통제의 관계 자체만으로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미국이 인권법과 인도법에 반하는 행위의 자행을 지시했거나 집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

48)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3쪽.

49) 같은 판결, para. 58.

50) 같은 판결, para. 74. 또한 재판소는 대사관 점거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그러한 공격을 종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판결, paras. 60-68.

51)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14쪽

52) 같은 판결, paras. 202-209, 239-249, 292 (3), (4).

다.<sup>53</sup> 재판소는 콘트라반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민간인 학살 등이 자행된 군사 또는 준군사작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여 책임귀속의 기준을 명백히 하였다.<sup>54</sup>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미국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사나 경찰관 등을 처형할 것 따위의 인권유린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게릴라전 중의 심리작전'이라는 교본을 미국이 출판하고 반군에 배포한 것은 국제법에 반하여 콘트라의 인도법규 위반행위를 고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콘트라의 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sup>55</sup>

#### 4. 타디치 사건과 '포괄적 통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효율적 통제기준은 타디치 사건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제1심 재판부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sup>56</sup> 항소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sup>57</sup>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고의 행위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책임을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sup>58</sup> 재판소는 앞서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무력충돌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sup>59</sup> 따라서 피고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던 시기의 무력충돌을 보스니아공화국과 피고도 일원이었던 세르비아

53) 같은 판결, para. 115.

54) 같은 곳. 또한 Separate Opinion of Judge Ago, 같은 판결, 181쪽, paras. 14-19 참조. 재판소는 미국국적자가 아니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지시와 감독 하에 항구의 기뢰가설 등의 군사작전을 벌인 남미국가들의 국적을 갖는 개인들(소위 UCLA)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paras. 75-80, 86).

55) 같은 판결, paras. 116, 117, 220, 255, 292 (9). 유일하게 이 결정에 반대한 오다 판사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다.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같은 판결, 202쪽, para. 3.

56) *Prosecutor v. Tadic*,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이하 'ICTY'), Trial Chamber II, Judgment of 7 May 1997, para. 595; 112 International Law Reports 2쪽. Separate an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McDonald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 of the Statute, 같은 판결도 참조.

57) *Prosecutor v. Dusko Tadic*, ICTY, Appeals Chamber, Judgement of 15 July 1999(이하 '타디치 항소심판결'), para. 124 (<http://www.un.org/icty/tadic/appeal/judgement/main.htm> 수록).

58)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제2조;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2 (1993), 1192쪽.

59) *Prosecutor v. Tadic*, ICTY, Appeals Chamber,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2 Oct. 1995, para. 84; 105 International Law Reports 420쪽.

계의 (반란)군사조직 사이의 내전, 다시 말해 '국내무력충돌'로 볼 경우 그 행위가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구성하지 않게 된다.<sup>60</sup>

당시 세르비아계 반군이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로 이루어진 유고연방공화국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소위 '보스니아 내전'의 성격 결정은 쉽지 않았다. 타디치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의 다수의견은 니카라과 판결의 효율적 통제기준을 원용하면서 이는 바로 '지휘와 통제'를 뜻한다고 하였다.<sup>61</sup> 재판부는 유고와 반군의 관계는 연합군의 경우처럼 조절과 협조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국 유고연방군이 철수한 1992년 5월 이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항소부의 다수의견도 국내적인 무력충돌이 일용 국제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즉 유고연방)이 '자국을 위해' 전투를 하는 군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를 행사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였다.<sup>62</sup> 항소부는 먼저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를 위하여 수행한 개인의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책임 여부의 결정에 대한 선결문제인 무력충돌의 성격결정에도 국가책임의 법리에서 발전된 통제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다.<sup>63</sup> 항소부는 사적 개인의 행위를 국가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제의 정도는 사안의 사실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sup>64</sup> 국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행위하는 상황과 군사단위, 비정규군 또는 반군과 같이 조직되고 계급구조를 갖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상황을 구별하였다.<sup>65</sup> 항소부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집단 전체가 국가의 '포괄적인 통제'(overall control)를 받으면 충분하고 국가의 강제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일 필요가 없다.<sup>66</sup>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국내법제나 구체적인

60) Siyun Cho,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Internal Armed Confli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1996), 90-100쪽.

61) 앞의 주 56에 인용된 판결, paras. 598, 600.

62) 타디치 항소심판결, para. 97.

63) 같은 판결, para. 104. 1975년 터키의 사이프러스 침공이래 터키의 주도로 설립된 북사이프러스 터키공화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접근 거부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터키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지역당국이 터키의 '효율적, 포괄적 통제'(effective overall control) 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럽인권협약의 터키 점령지역에 적용됨을 인정하였다. *Loizidou v. Turkey (Meri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ement of 18 December 1996; 108 International Law Reports 445쪽, para. 56.

64) 타디치 항소심판결, para. 117.

65) 같은 판결, para. 120.

66) 같은 판결, paras. 120-123.

지시가 없음을 들어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7</sup>

국제법상 요구되는 국가 통제의 정도에 대하여 항소부는 군사집단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또는 군사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활동계획을 조정하고 도움을 주면 충분하다고 한다.<sup>68</sup>

“국제법상 통제하는 기관이 그에 의존하는 단위의 모든 작전을 입안하고 그 목표물을 선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주장되는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결코 없다.”<sup>69</sup>

항소부는 통제국의 영토 밖에서 무력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는 물론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에도 일반적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국내분규이고 국가권력이 약화된 때에는 통제의 진정성에 대한 훨씬 더 광범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고, 유고의 경우처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인접한 국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군대를 통해 영토확장을 피하는 경우에는 쉽게 입증될 수 있다고 하여 요구되는 통제의 정도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sup>70</sup> 이러한 항소부의 기준은 니카라과 판결의 ‘효율적 통제’보다는 덜 엄격한 것이고 따라서 니카라과 사건의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콘트라 반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항소부는 특정한 지시 또는 사후 추인이나 포괄적인 통제와는 다른 제3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이 국가구조 안에서의 실제행동 때문에 국가기관과 동질시 되는 경우이다.<sup>71</sup> 항소부는 “군대의 체제 안에서나 이와 연관되어 또는 국가기관과 결탁하여 행위한 사적 개인”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sup>72</sup> 이 기준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부는 벨젠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살해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폴란드 국적과 오스트리아출신 유대인 피수용자들이 수용소 관리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독일군대의 구성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판결,<sup>73</sup>

67) 같은 판결, para. 123.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지시의 존재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1차 보고서, para. 215.

68) 같은 판결, paras. 130-131.

69) 같은 판결, paras. 137.

70) 같은 판결, paras. 138-140.

71) 같은 판결, para. 141.

72) 같은 판결, para. 144.

73) *Trial of Joseph Kramer and 44 Others*, British Military Court, Luneberg, 17th September-17th November, 1945, Law Reports of Trials of War Criminals, Selected and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Published for the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독일군이 아니면서 보안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통역관으로서 독일 특수부대(SD 또는 Einsatzkommandos)의 군복을 입고 학살현장에 있었던 화란국민을 적국의 공무원으로 간주한 판결,<sup>74</sup> ‘군대식 제복’을 입은 이란 ‘혁명보위대’(Revolutionary Guards)의 차량탈취에 대한 이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sup>75</sup> 등을 들었다.<sup>76</sup>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항소부는 사건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군대가 유고연방공화국을 위해 이의 포괄적 통제 하에 행동했으므로 국제무력충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우고 피고의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다.<sup>77</sup>

타디치 사건에서 샤하부딘 판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의견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sup>78</sup> 그는 이 사건에서 문제는 유고연방공화국이 세르비아계 군대를 통해 보스니아에 대해 무력을 행사했느냐이지 세르비아계 군인들의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고가 책임을 지는가가 아니라고 한 다음,<sup>79</sup> ‘효율적 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유고의 통제가 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할 수준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스니아에 대한 무력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국제무력충돌이 된다고 하였다.<sup>80</sup>

유고내전과 관련하여 보스니아 정부는 특히 유고연방공화국의 지도 아래 이를 위하여 그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계의 군대와 준군사조직에 의해 자행된 ‘종족청소’와 같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문제를 제기하고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다.<sup>81</sup>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 인정에 관한 국제법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 기대된다.

by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47, vol. II, 1, 152쪽.

74) *Public Prosecutor v. Menten*, The Netherlands Supreme Court, Judgement of 29 May 1978, 75 International Law Reports, 331, 347쪽.

75) *Daley v. Islamic Republic of Iran*, Award No. 360-1-514-1 (1988), 18 Iran-U.S. Claims Tribunal Reports 238쪽, para. 19.

76) 타디치 항소심판결, para. 142-4.

77) 같은 판결, paras. 162, 171.

78) Separate Opinion of Judge Shahabudeen, paras. 5, 21.

79) 같은 의견, para. 17.

80) 같은 의견, paras. 14-9. 그 역시 니카라과 판결이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 없이 외국의 군사조직을 통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는 국가이외의 실체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그러한 무력행사로 위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게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para. 20).

81)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Servia and Montenegro))*,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April 1993, ICJ Reports 1993, 3쪽; Further Requests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3 September 1993, ICJ Reports 1993, 325쪽.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초안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크로포드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초안 제8조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가 특정한 작전을 감독·통제했고 문제된 행위가 그 작전의 필수적 또는 통합된 구성요소이거나 의도된 일부일 경우에만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sup>82</sup> 이 원칙은 어느 작전과 단지 우연히 또는 주변적으로(incidentally or peripherally) 연관되거나 국가의 지시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와 아울러 추가적으로 특정행위가 계획의 일부라거나 의도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국제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5. 예외적 상황에서의 국가권력의 행사

전쟁, 외국의 점령, 혁명, 내전 등이 벌어져 국가권력이 해체되거나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법한 권한이 없이 국가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sup>83</sup>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은 공무기관(official authorities)의 부재 속에 정부권한의 일정요소(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의 행사가 요청되는 사정 속에서 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국가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84</sup>

이러한 ‘긴급대행자’(agent of necessity)의 범리는<sup>85</sup>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발생한 수많은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이란·미국 청구권재판소에 의해 적용되었다. 예컨대 예거 사건에서 이란의 ‘혁명보위대’(revolutionary guards 또는 revolutionary Komitehs)가 미국인들을 이란에서 추방하기 위해 집밖으로 끌어낸 다음 사흘 동안 호텔에 감금하고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이란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되었다.<sup>86</sup> 혁명으로 정부의 경찰부대가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법질서의 유지에 나선 혁명보위대원들은 임시정부에 속하지 않았다.<sup>87</sup> 그러나 재판소는 호메이니 지지자들로 편재

82) 1차 보고서, para. 216.

83) 예컨대 군민병(群民兵 또는 群民蜂起, 'levée en masse'), 즉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헤이그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2조)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1907년 헤이그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제3조; 김정진 외, 앞의 책, 867쪽. 또한 1949년 제네바 협약 각 제13조(6); 제13조(6); 제4조 (1) (바); 제4조 참조.

84) 제8조 (b).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5-286쪽.

85) 1차 보고서, para. 217 참조.

86) *Yeager v. Islamic Republic of Iran* (1987), 17 Iran-U.S. Claims Tribunal Reports 92쪽; 82 International Law Reports 178쪽.

87) 같은 판정, paras. 23, 37.

된 지역혁명위원회가 체포, 재산몰수를 하는 등 지역경찰로 행세하였던 사정과 이 사건에서 보위대원들이 “평상복을 입었으나 신정부와의 연관을 나타내는 뚜렷한 완장을 차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로 이민과 통관에 관한 업무를 보고 보안요원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였다.<sup>88</sup> 재판소는 보위대원들이 “새 정부가 알았음에 틀림없고 특별히 반대하지도 않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권한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추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입장책임은 피고국인 이란에 있다고 하였다.<sup>89</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컨대 해방후 미군정이 확립되기까지, 미군정시기, 정부수립 후 소요와 군사반란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전부 또는 일부 미치지 않았던 상황동안 국가권력의 행사를 빙자하여 벌어진 각종 학살사건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의 법리에 비추어본 국가책임문제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 IV. 외국주둔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

한국전쟁중에 파견된 미군,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군의 주둔이나 자국군의 파병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는 한층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비추어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이에 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1. 국제법위원회 조문초안 제9조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고 미군의 파병에 뒤이어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군대를 파견하였다. 파견된 한국군은 베트남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Free World Assistant Military Organization)라는 독립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이 기구의 사령관은 월남군사령관이었고 미군과 한국군 모두 베트남의 작전통제를 받았고 한국군과 미군은 “철저하게 월남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부대에 불과”했다고 한다.<sup>90</sup> 베트남 주도의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의 작전통제 아래 저질러진 민

88) 같은 판정, paras. 12, 39, 41, 44, 45.

89) 같은 판정, para. 43.

90) 이장희, ‘한국의 국가책임 면제될 순 없다: 국제법적으로 풀어본 베트남 양민학살 …‘용병의 책임’ 문제는 논란거리’, 한겨례21, 2000.1.13, 10쪽.

간인학살과 같은 한국군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초안 제9조를 근거로 통제국인 베트남에 귀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91</sup> 물론 이 견해에 있어서도 한국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7조에 따라 “비록 월남 정부의 책임 아래 이뤄지긴 했지만, 양민학살 행위에 한국의 지원부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도 어느 정도 부분적 국가책임이 있다”는 것이다.<sup>92</sup>

먼저 위의 주장이 들고있는 국제법위원회의 초안 제9조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한 국가의 처분(disposal)에 맡겨진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그 처분에 맡겨진 국가의 정부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국제법상 후자의 행위로 여겨진다”(필자 역)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대한 국제법위원회의 주석에 따르면 ‘처분에 맡겨졌다’는 것은 그 기관이 당해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 그 국가조직과 결합하여 파견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혜국의 배타적인 감독과 통제 하에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sup>93</sup>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가 실제 군사작전에서 가진 역할은 좀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파병된 한국군이 주월 한국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별개의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일정한 지휘통제권을 한국정부가 계속 행사하였던 베트남 전쟁의 경우에 접수국의 유일한 지휘나 통제를 받는 이른바 “빌려온”(loaned) 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9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sup>94</sup> 베트남 전쟁 중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법상 한국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한국에 있음이 명백하다.<sup>95</sup> 다만 이러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다른 국가들의 관여가 있을 경우 이들의 책임여부가 별도의 문제로 제기된다. 그렇다면 남베트남 정부의 일정한 관여 아래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지휘통제권을 가졌던 한국군(미군)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91) 이상희, 앞의 글, 11쪽.

92) 같은 곳.

93) ILC Yearbook 1974, vol. II (Part One), 287쪽. 또한 U1차 보고서, paras. 227-230에 소개된 사례 참조.

94) 예컨대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주월 한국군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131호(1964.10.31 서명, 발효); 1964년, 1965년, 1969년에 체결된 한국, 베트남, 미국 사이의 군사실무협정서들 참조(국방조약집, 제1권(1945-19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1), 234, 250, 254, 258, 442, 458쪽).

95) 한국은 대규모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시점에서 1949년 제네바협약을 비준하였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예컨대 H. Meyrowitz, ‘The Law of War in the Vietnamese Conflict’,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vol.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516쪽 참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제네바협약이 베트남 전역에 적용된다는 입장이었다. ICRC, Annual Report 1967, 20-21쪽.

문제는 앞에 제시된 견해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련국의 공동책임(joint responsibility)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 2. 국제법상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의 책임

먼저 한국군의 위법행위가 베트남의 영토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베트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의 국제법위반행위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로 곧바로 남한 또는 북한이 이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은 당연하다.<sup>96</sup>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sup>97</sup> 초안 제12조 1항도 “다른 국가의 영역 또는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여타의 영역에서 어느 국가의 기관이 그러한 자격에서 행한 행위는 국제법상 전자의 행위로 여겨지지 않는다”(필자 역)고 규정한다.<sup>98</sup> 따라서 한국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책임의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로포드 교수는 공동책임에 관한 초안의 규정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편의상 ① 공동행위, ② 공동의 기관을 통한 행위, ③ 대리(agency), ④ 그 자체로 불법적인 다른 국가의 가담행위, ⑤ 불법행위 자행의 자발적 지원, ⑥ 불법행위의 고무·선동(incitement), ⑦ 감독, 강압(compulsion) 또는 강제(coercion),<sup>99</sup> ⑧ 불법행위후 주어진 지원(사후방조), ⑨ 동일한 피해 또는 손해의 제(諸)측면을 개별적으로 야기하는 다수 국가의 행위의 경우 등으로 나누어보고 있다.<sup>100</sup>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만을 다루기로 한다.<sup>101</sup>

96) 38선을 넘어 북한지역에 진주한 미군의 행위를 남한지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의 ‘수복(收復)’으로 이해할 지 국제법상 전시점령의 한 경우로 할 지에 대하여는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97) *The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Albania)*, Merits, ICJ Reports 1949, 4쪽.

98) ILC Yearbook 1975, vol. II (Part One), 83-86쪽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불법행위의 장소가 어느 국가의 영토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에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당연한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크로포드 특별보고관은 이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1차 보고서, paras. 252-254; UN Doc. A/CN.4/490/Add.6, 24 July 1998, 6쪽.

99) 조문초안 제28조.

100)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by Mr. James Crawford, Special Rapporteur, UN Doc. A/CN.4/498/Add.1(1 April 1999), para. 159 (이하 ‘2차 보고서’).

101) 이러한 공동책임의 발생사유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의 합동작전과 같은 ‘공동행위’로 민간인학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국 모두의 책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로

#### 가.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7조 - 원조와 지원

한 국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의 자행에 도움을 준 다른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7조는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원조(aid) 또는 지원(assistance)은 후자에 의해 수행된 국제위법행위의 자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한 원조나 지원이 그 자체만을 고려할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다.<sup>102</sup> 어느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지원국의 책임은 국제위법행위 자체의 위법성에서 흘러나온다는 측면에서 파생적 또는 부수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sup>103</sup> 그러나 모든 형태의 지원이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원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정황을 알고 이의 실행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국이 그 행위를 직접 저질렀다해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이 요구된다.<sup>104</sup> 또한 제공된 지원이 위법행위의 수행에 필수적일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충분하다.<sup>105</sup>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선동이나 고무행위 자체만으로는 국제법상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국제책임을 가져오지 않는다.<sup>106</sup>

#### 나. 국제법위원회 초안 제28조 - 감독과 통제

한국과 베트남의 책임관계에 관하여 보다 직접적인 규정은 국제법위원회초안 제28조이다. 같은 조 1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권한(the power of direction or control) 아래에 있는 활동분야에서 그 국가에 의해 자행된 국제위법행위는 그 다른 국가의 국제책임을 가져온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어느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자유세계군사원조기구’가 일종의 ‘공동기관’으로서 한국군의 학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③의 경우에도 국제법상 베트남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한국군이 민간인학살이라는 국제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크로포드 교수는 대리문제에 관하여 각각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배상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초안 제1-3조로 해결된다고 한다. 앞의 보고서, para. 162. ⑦에 관해서는 초안 제28조 2항, ⑧에 대하여는 2차 보고서, para. 211 참조.

102) ILC Yearbook 1978, vol. II (Part Two), 99-105쪽 참조. 또한 J. Quigley, ‘Complicity in International Law: A New Direction in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7 (1986), 77쪽 참조.

103) 2차 보고서, para. 165.

104) 1999년 국제법위원회 초안위원회에서 잠정 채택된 제27조 본문, UN Doc. A/CN.4/L. 574.

105) 2차 보고서, paras. 166-185, 212(수정초안).

106) 같은 보고서, para. 211. 또한 니카라과 판결, 앞의 주 51, para. 255; Dissenting Opinion of Judge Schwelbel, 같은 곳, para. 259.

다른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인정된다고 해도 위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107</sup> 국제법위원회는 이러한 통제·의존관계의 예로서 (조약에 의한) 부용국(附庸國), 피보호국, 군사점령(military occupation)의 경우를 들고 있다.<sup>108</sup>

초안의 ‘감독·통제권한’이라는 기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판례나 이론적 근거가 거의 없고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다른 나라의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종속국(dependent State)도 국제법상 국가인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109</sup> 물론 이러한 비판에 따를 경우에도 지배적 국가(dominant State)는 종속국 또는 자신의 통제나 점령하의 영토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지지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종속국에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영역에서의 종속국의 모든 위법행위를 지배국에 귀속시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sup>110</sup> 이러한 논의에 바탕하여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위원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실제로 감독 또는 통제한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통제를 하는 국가는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sup>111</sup>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책임에 관한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남베트남이 한국 등으로부터 군대의 파견을 비롯한 지원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바로 한국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국제책임과는 별도로 남베트남, 미국 등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지원·방조하였다거나 이들이 학살행위를 실제로 지시하거나 통제했음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sup>112</sup> 이 국가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속한 한국의 책임이 여전히 남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학살에 가담한 다른 국가와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 이론적으로 각각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의 성격이나 내용, 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액수의 산정 등도 달라질 수 있다.<sup>113</sup><sup>114</sup>

107) 초안 제28조 3항: “전항의 규정은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다른 조항의 적용에 따른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ILC Yearbook 1979, vol. II (Part Two), 94-106쪽; 2차 보고서, para. 158 참조.

109) 2차 보고서, paras. 197-198.

110) 같은 보고서, para. 198.

111) 2차 보고서, paras. 199-200.

112) 베트남의 통일로 남베트남의 국가책임에 대한 승계문제가 발생한다. 이장희, 앞의 글, 10쪽 참조. James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1979), 285쪽 주 93도 참조.

일본의 항복선언후 미국이 1945년 9월 9일이래 남한지역을 점령하여 군정통치한 시기 동안 미국점령군에 의해 직접 또는 군정당국의 묵인 하에 저질러진 행위와 미국이 방지할 수 있었던 사인들의 살상행위를 포함한 각종 인권유린행위에 국가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군사점령의 경우 점령국은 점령지역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국가기관이 저지른 국제위법 행위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고 자신의 감독과/나 통제를 받는 피점령국에 의한 국제위법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sup>115</sup> 나미비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 또는 권원(title)의 정당성이 아닌 영토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라고 한 바 있다.<sup>116</sup> 따라서 미군정기의 학살행위에 대한 책임은 군정경찰, 경찰대, 경비대 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과 같은 우익단체에 의한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통제가 인정되면<sup>117</sup> 점령국인 미국에 귀속된다.<sup>118</sup>

113) 제12, 27, 28조 이외에 공동책임 문제가 배상에 미치는 영향은 초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상의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2, 240쪽*(1968년 나우루의 독립이전에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신탁통치국의 일원이었던 호주의 훼손된 인산토지에 대한 책임). 다만 배상의 한 형태로서 명시적인 책임의 인정이나 사죄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4) 한미 행정협정 제23조 5항 (마)는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미국에게만 책임 있는 경우 배상액의 25%를 한국이 부담하고 공동책임인 경우에는 양국이 균등부담할 것을 정하고 있다. 주둔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이 조항의 타당성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책임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문스럽다. 김부찬, 앞의 글, 169쪽; 이석우, 앞의 책, 215쪽; 장주영,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 불평등한 SOFA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43-44쪽도 참조.

115) 예컨대 ILC Yearbook 1979, vol. II (Part Two), 100-101쪽; 이한기, 앞의 책, 578쪽 참조.

116)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1970),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71, 16쪽*, para. 118. 나미비아의 독립에 관하여는 이상면, ‘나미비아에 있어서 민족자결주의의 실현’, 인권과 국제법(석암배재식박사 화갑기념), 박영사(1989), 177쪽 참조.

117)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한국이 법적으로(de jure) 국가로서 계속한 것인지 아니면 1948년 정부수립으로 새로운 국가가 생긴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Crawford, 앞의 책, 281-284쪽; Adam Roberts, ‘What is a Military Occupat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5 (1984), 249, 285쪽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조약 제1124호(조약번호는 추후 지정된 것임)(1948.8.11 서명, 발효);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8.24 서명, 발효), 제1조(“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군대의 한국철도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2조 참조.

118) 대한민국을 하나의 새로운 국가로 볼 경우 미군정기에서와 같이 국가성립이전의 행위에 대한 국

한국전쟁중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책임문제 또한 이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주축으로 국제연합군이 결성되었다.<sup>119</sup> 한국군은 1950년 7월 15일 미국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주었다.<sup>120</sup>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미군과 한국군이 저지른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에 귀속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sup>121</sup> 이들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귀속은 앞에서 논의한 감독·통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sup>122</sup> 앞으로 특정한 학살과 관련한 양국 군대의 역할이 보다 자세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V. 맷는 말

지금까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귀속문제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학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군인,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학살에 직

가책임의 승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불법지배하의 나미비아에서 남아공 점령군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독립후 나미비아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나미비아 법원은 남아공 행정당국에 의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락한 헌법의 규정과 독립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득권으로서 부정될 수 없다는 점에 입각하여 나미비아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Namibia v. Mwandinghi* (1992), 91 International Law Reports 341.

119) 안보리 결의 82호(1950.6.25), 83호(1950.6.27), 84호(1950.7.7); 번역문은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국제문제연구소 (1990), 170-172쪽. 이 군대가 진정한 의미의 유엔군인가는 논란이 된다. 예컨대 G. I. A. D. Draper, ‘The Legal Limitations Upon the Employment of Weapons by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Congo’,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 12 (1963), 387, 388쪽.

120)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간의 교환공한(1950.7.14), 국방조약집 제1권, 629쪽. 또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조약 제1152호(1954.11.17 서명, 발효) 참조.

121) 조문초안 제13조; ILC Yearbook 1975, vol. II, 87-91쪽; 1차 보고서, paras. 256-262 참조. 또한 예컨대 D.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A Legal Study of United Nations Practice, Stevens & Sons (1964); Finn Seyersted,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Law of Peace and War, Leyden (1966) 참조.

122) 예컨대 R. Baxter, ‘Constitutional Form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Military Command’,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9 (1952), 325, 334-6쪽 참조; D. S. Wijewardane, ‘Criminal Jurisdiction over Visiting Forc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Forces’, 같은 책, vol. 41(1965-66), 122, 164-167쪽; Roberts, 앞의 글, 290쪽. 또한 Department of Army, Field Manual: The Law of Land Warfare (1956), para. 8; War Office, The Law of War on Land, Being Part III of the Manual of Military Law (1958), para. 7 참조. *Re Harshaw Chemical Companys Patent* (1964), 41 International Law Reports 15, 20쪽; *Jennings v. Markley*, 186 F. Supp. 611쪽 (1960), 32 같은 책 367쪽; *US v. Bancroft* (1950), 20 같은 책 586쪽도 참조.

접 가담하거나 묵인한 경우는 물론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학살한 경우에도 국가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 이러한 법리는 학살이 '적국민'(enemy nationals)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하여 자행된 경우에도 타당하다. 또한 어느 국가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방위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그 나라에 주둔하거나 파병된 경우에도 파병국이 자국의 군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한 주둔국의 책임문제와는 별개로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병국과 주둔국이 특정한 위법행위를 같이 저지르거나 이를 도운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되며 주둔국은 파병국에 대신하여서가 아닌(대위책임, vicarious liability) 자신의 가담행위의 위법성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진다. 군사점령의 경우에는 점령국은 자신의 통제하에 벌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외국군과 함께 하나의 국제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자국군대의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관련한 학살사건들에 있어서 국제법은 이러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가 국가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에 의해 단독으로 또는 외국과의 공모로 벌어진 민간인학살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가 소속한 정부, 다른 국가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귀속의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국가가 어떤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실체법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책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책임문제의 제기가 가해자의 개인책임과 피해자의 구제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가져야 하는지,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도 진실과 정의, 피해자의 인권의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책임의 인정과정은 식민지, 군정, 전쟁, 독재로 점철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과거인권유린행위의 해결에 있어서 작은 출발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가기관이나 외국주둔군에 의해 계속되는 인권침해는 이 문제가 단지 역사적, 지적, 학문적 작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책임을 입증한다. 과거 인권침해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미행정협정이 국가책임문제를 모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권침해의 재발이라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이러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아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반적 공식은 없으며 단지 정의와 인권이념에 의지하여 개별 상황의 특수성만큼이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와 국가 속에서 진정한 과거청산의 길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시점이다.

## 한국현대사와 인권

지명관(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한국 현대사에서 직접 체험한 인권부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지난 천년 동안에 가장 뛰어난 남성으로 두 번째를 박정희라고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세 번째를 육영수라고 했다는 오늘의 한국 인권상황에서 하는 말이다.

### 인권부재 이야기

우리 모두는 인권부재를 빠저리게 느낀 경험을 심한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것을 왜 말해야 하는가. 하나 아렌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1961년)라는 책에다 수록한 「진실과 정치」라는 글 끝머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서술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사건은 우연성을 떠나서 누구나 이해하게 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아렌트는 말했다. 「현실과의 화해」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헤겔이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思考)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충동에서 떠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리하여 아렌트는 시인의 경우처럼 그 때 슬픔(grief)은 탄식(lamentation)으로, 환희(jubilation)는 찬양(praise)으로 승화된다고 했다. 여기서 판단도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해방이후의 조국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북한땅에서 체험했다. 120퍼센트의 노동성과를 낸다고 땅을 파면서 어떻게 속이는가를 보았다. 숙청을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며 그 속에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한가를 보았다. 그리고 남쪽 땅에서는 바르게 살고 있으리라고 남쪽을 동경했다.

월남 길에 떠나 청단에 도착했을 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폭행을 가하는 집단에 직면해야 했고 윤봉길 의사의 영화에서 동포가 고문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자 임석경관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겪어야했다. 「같은 동포로서 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했을까」. 어둠 속에서 누구도 이에 대해서 항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해방된 조국 남북의 모습에 비관하고 신비주의 종교사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

6·25 사변으로 군대에 나갔을 때 대구 역전에 집합한 우리 부대를 향하여 고급참모가 엄중한 경고를 하고는 분대장 이상에게 총살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공포심을 주어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었겠지만 그 후 군대내에서 그러한 무서운 경우를 몇 번이고

경험해야만 한다. 노근리 사건 등에 대한 보도에 접하면서 6·25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군사정권에 비판적이었고 무엇인가 무서운 사태가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 한국현대사의 흐름

탄식하는 뜻에서 한국현대사를 되돌아다볼 때 친일파 처단 문제, 민주화 문제, 인권 문제 등은 같은 선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전체주의의 기원』 제2권) 나치나 스탈린주의란 대륙제국주의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 제국주의도 아시아 대륙에서 침략을 일삼으면서 무력적인 탄압을 가하고 동화를 강요한 대륙제국주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일파와 같은 반역자들이 도처에서 양산되었다.

오늘의 러시아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산당에서 자란 혁신적인 인물이 집권했다고 해도 KGB의 반인권적인 폭력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구세력이 전국적으로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일파 지주나 경찰세력이 반공세력으로서 살아남은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있다. 공산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이 반공세력이라고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유추하면서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 시민사회와 문제

인권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민社会의 성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유르겐 하버마스는 『근대에 대한 철학적 담론』(1985년)에서 「근대의 규범적 성격」을 논했다. 첫째로 근대의 원리는 「주관성」에 있다. 둘째로 이 「주관중심적 이성」은 「인륜적 전체성」을 분열시킨다. 셋째로 그러므로 주관성은 좁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자기반성」을 수행하고 「화해」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권이란 「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면서도 「자기반성」을 통해 「화해」를 찾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실 위의 1에서 2로 가는 과정을 보여준 시민사회 즉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서는 헤겔도 마르크스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때 개인이란 서로 적대하는 애톰(atom)적인 존재이고 그러한 시민사회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겔은 국가야말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기구라고 보았고 마르크스는 그러한 사적인 이해의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이루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국가라고 보았다. 그러한 마르

크스를 이은 좌파사상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정의가 나타난 것은 특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그람시의 경우이고 그의 『옥중노트』(1929-1935년)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국이 오는 것에 저항하며 그 상부구조는 현대전(1917년의 제1차 대전)에 있어서의 「참호 체계」(trench-systems)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람시는 국가는 좀처럼 정부인데 시민사회와 국가 즉 정부와의 사이에는 중요한 내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조직된 혜택모니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윤리적 기능을 가지고 국민 여론에 대한 교육을 하고 경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의 관습이나 여론으로 시민사회는 필요한 때 어떤 기구나 세력에 대해서 강제력없이 「집단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람시는 국가의 절대권력화를 경계하면서도 정부가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대중 소비사회와 「시민국가」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는 대중소비사회로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쪽에서는 마르크스가 본대로 원자적으로 분열한 채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전락해 가는 것 같아 보인다.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투기금융자본 앞에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문제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고삐 풀린 「주관성」이 좁은 한계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화해」를 찾아 나아가기를 권고해야만 한다. 그 길을 하버마스가 말하는 「사회라는 마비된 매크로(macro)의 주체를 구하기 위하여… 혁명가가 참여하려고 해도 그런 회로(回路)가 존재하지 않는」 비혁명적인 상황에서 찾아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 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에 의한 사회관계, 그러한 품위있는 사회를 추구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사사로운 조직의 양상으로서 참호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오늘 탈중심화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와 세력에 대한 집단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더욱이 매스컴이 오로지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 같은 부르주아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압력도 행사해야만 한다. 인권운동도 말하자면 이러한 광범위한 시민운동과 궤를 같이하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종전의 시민사회와는 내실을 달리했다고 생각해서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교수가 「시민사회 국가」 또는 「시민국가」(civic state)라는 개념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은 꼭 흥미 있는 일이다. 시민국가란 국내적으로는 시민과 대화를 하고 국제적으로는 특정한 국가이익을 넘어서 행동하려는 정부를 말한다. 그것은 근대적 시민사회를 넘은 포스트모던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근대적 시민사회란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트랜스 내셔널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국가는 약화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야 한다. 시장경제만이 세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세계화되어야 하고 시민운동, 인권운동도 세계화되어야 한다. 사카모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민사회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또는 폐쇄적인 주권의 한계를 고집하는 근대 <국민국가>나 개별적인 시민사회는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무력한 시민의 힘」이 냉전의 붕괴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를 변화시킨다.

끝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어진다. 일반적으로 국민국가가 취약한 곳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지방과 지방사이에서라고 등 여러가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아렌트의 「폭력에 대하여」(1969년)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사를 던져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대국은 몸집이 커서 움직이기 어렵다. 새로운 가능성은 소국에서, 대국의 경우는 「작지만 잘 한계지워진 지구」(small, well-defined sectors)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 경우에 이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의식있는 시민의 앙상블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부언하고자 한다. 만약 개혁적이며 인권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밑으로부터의 개혁의지와 충돌해서 시민참여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개혁을 억압하는 정권아래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로부터의 개혁이란 그러므로 과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한국여성운동의 2000년 핵심과제 : 호주제 폐지운동

지하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운동은 2000년 운동의 핵심과제로 호주제 폐지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남계혈통위주의 호주제는 가부장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민법 중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고, 가의 장은 호주이며 호주는 가족의 거가(去家)에 대한 동의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입적시킬 권리, 친족회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하면서 호주권을 대폭 축소시킨 결과, 호주의 권한은 명목적 권한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호주제의 유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법상 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따라서 호주제의 폐지는 부계혈통중심의 공문서로서 호적제도 폐지를 의미한다.

###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좁게는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을 유발시키고, 넓게는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순위는 또한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어긋난다.

둘째는 호적제도가 여성입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혼인으로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 민법은 자녀는 출생으로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父)를 알 수 없을 때는 모가(母家)에 입적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사회적으로 모가호적에 입적한 자녀를 차별하는 의식을 발생시킨다.

여성의 자녀와 남성의 자녀에 대한 차별인 것이다. 민법은 여성의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의 혼인외 자녀는 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적은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호주는 남편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가 호주제의 성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67세로 큰아들이 5살 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첨을 들이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왔다.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열심히 돈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하였고 그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남편과 첨 사이에 낳은 아이들 세명은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남편과 나를 부모로 하여 호적에 올라있다. 상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게되면 첨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될 것이라는 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양성평등과 호주제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호주제는 가계는 남계혈통중심으로만 이어져 가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가족을 이을 남아를 선택적으로 낳도록 강요하여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아를 불법 낙태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감별낙태는 인구의 남녀성비 불균형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남아출생 성비	셋째아이 출생성비
1988	113.26	164.4
1989	111.75	181.4
1990	116.48	189.0
1991	112.39	179.5
1992	113.63	191.4
1993	115.39	202.6
1994	115.22	202.8
1995	113.28	177.5
1996	111.66	164.2
1997	108.41	133.6
1998	110.2	118.8

이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남녀성비는 무너지고 남아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이들이 성년에 이르면 적정한 연령의 결혼상대자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지역별 출생성비의 비교는 경북 특히 대구지역에서 남아 출생률이 현격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강한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 시도별 출생성비(1998)

시	도
전국	110.2
충청남도	111.0
서울	109.9
전라남도	110.2
부산	112.9
경상북도	114.4
대구	116.5
경상남도	113.1
인천	108.8
제주	112.2
광주	107.9
경기	108.8
대전	110.5
강원	109.3
울산	115.7
충북	108.3
전북	108.4

현재의 호주제도는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미혼모 등 단독가구 등이 현저히 늘어나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재혼율(97년 현재 총 혼인에 대한 재혼율 : 여자 8.3%, 남자 8.0%) 증가라는 현실에서 어머니가 친권을 갖게 되어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현실과 법의 괴리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호주제 폐지운동을 통해 현실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은 정치, 경제, 사회, 가족생활 등 각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조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가족 생활 영역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존엄, 혼인의 자유, 양성의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적 가족 제도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 보장 규정이다. 그런데 호주제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양성평등의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양성평등은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협약 제1조)"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제2조)"한다고 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률적 평등 뿐만 아니라 관습 및 관행 등 전통과 문화에서 비롯되는 여성차별도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바항).

99년 3월 현재 전세계 163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우리나라로 1984년에 가입했으며,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입당시 한국정부는 협약의 제9조 국적법에 관한 조항과,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8개 조항 중 4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4개의 유보조항은 (1)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항, (2)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3) 자녀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등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와 책임, (4)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등이다. 제9조 국적법에 관한 유보는 위헌으로 판결되어 98년 유보가 철회되었고, 제16조의 4개항에 대한 유보는 가족법 개정이후 91년에 앞의 3개 조항에 대한 유보는 철회되었다. 따라서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 중 가족성 및 직업선택등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유일한 유보조항으로 남아있다.

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유보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철회하며,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가족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 호주제 폐지 후 어떤 새로운 신분제도가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인 1적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다.

**1인 1적제 편제방식**은 모든 개인이 출생하면서 호적을 갖는 방식으로 출생, 결혼,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개인 단위로 기록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의 장점은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등의 사항을 기록하므로 출생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종속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적인 대안이다.

1인 1적제 그 자체의 단점은 아니지만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국민적 반발이 문제가 된다. 국민정서상 개인별 신분관계 기재방식은 자식, 부모간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호주제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현재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세제 등이 모두 가구단위로 되어 있어서 1인1적제로의 변화는 복지수혜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정책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1인1적제를 지향하되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혼인한 부부를 중심으로 그 미혼자녀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혼인하게 되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새 호적을 편제한다. 부부의 혼인이 무효 또는 해소되면 미혼자녀인 미성년자녀는 친권자로 결정된 父나 母에 편제되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다. 이혼가구, 독신가구, 미혼부·모 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현실적으로 편제할 수 있다.

장점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함께 편제될 수 있어 미성년자녀를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상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거부감이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가족형태에 조응할 수 있다. 그러나 등재과정에서 남녀차별은 없지만 이혼 또는 재혼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표시가 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중 누구를 기준인으로 정할 것인가이다. 일본의 경우 부부가 기준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편을 기준인으로 정하는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남녀평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추첨을 하거나, 부부공동으로 기준인이 되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

가장 핵심적 문제가 남아있다. 부계혈통주의의 핵심인 성씨제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중 유일하게 유보조항으로 남겨두고 있는 성 선택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한 권리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녀의 출생시 부모의 합의 하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고 자녀가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자녀는 모두 한 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추첨에 의해 선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여전히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가족은 정서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사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결합으로 바뀔 것이다. 예컨대 모자가족, 부자가족, 혈연 관계없는 사람들의 가족 등으로 바뀔 것이며 이때에는 가계계승이라는 의미나 중요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는 가부장제 의식으로부터 탈피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성운동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첫 과제 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선택했다. 우리들의 가부장적 의식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 가족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고 남녀평등의식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호주제는 폐지될 것이다.

## 독신모(미혼모)의 모성과 여성성, 그 자녀들의 권리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진현숙)

### I. 독신모(미혼모)의 모성과 여성성, 그 자녀들의 권리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써내려 가야할지 거듭 고민이 앞서니 선뜻 펜이 잡히지 않는다. 자료들을 정리하며 받게 된 느낌은 한결같이 상투적이고 인권의 냄새를 전하는 구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학위 이수자들은 학위를 취득하면 끝이었을 것이고, 제자리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형식을 갖추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미혼모!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 제공자였으나 그 맷가만큼 지불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었던 것 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은 어두운 사회의 구석의 혹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족의 울타리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가족이라는 전통적이고 고정화된 울타리가 빚어낸 산물이다. 가족과 사회는 미혼모를 만드는 공범자이면서 가해자다. 미혼모가 되기까지 그들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한다. 출산이라는 산고외에 덤으로 얹어진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주홍글씨외에 무엇이 남았는가? 차라리 이 글은 학위를 받기 위한 글이면 쓰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나라 정책 때문이라고 부인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도 자신도 모르게 공범자가 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글은 우리가 사용할 그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상투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문학이나 예술 장르에 포함될 수 있는 글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사회성에서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를 통찰한 글들임을 알 수 있다. 처음 미혼모에 관한 자료들은 대했을 때 충격을 받은 동시에 “정말 내가 미혼모인가” 대체 미혼모가 무엇인가? 자신을 반문하게 했으며 처참해진 나를 돌아보게 했다. 당장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당장에 입안이 마련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사회문제로 다루어온 세월이 20년이 넘었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사회변화에 기준을 두고 대응한다고 한다. 이미 194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권의 바탕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그리고 미혼모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독신모·편모·무의탁모등의 선택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미혼모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다양한 형태로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동은 입양 대상이 되고 여기에 모성의 권리, 여성권리는 아예 존

재할 수조차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제도권때문에 사회복지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전반에 걸쳐 군림하고 있는 동안 가족을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진짜 사회문제는 모든 것이 통일성의 결여로 조화롭지 못하는 데 있다. 대학에서 다루는 사회문제를 문제로서 단정하기 보다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이 되기보다 의식의 전환을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진행되는 훈련과정이 되어야만 사회복지사, 상담원들의 사회진출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 그 상실의 세월들을 안고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을 그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떠들던 21세기는 결코 단순한 세기의 시작은 아닐 것이다. 이 해가 끝나는 날 21세기가 시작되는 첫 새벽. 나는 셋김굿이며, 푸닥거리라도 해서 가슴에 질기게 묶여있는 끈을 잘라버리고 싶다. 정말 그러고 싶다. 꼭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이 땅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과 편견으로 제대로 살다가지 못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이 글에 써어진 어휘 중에 미혼모는 독신모로 사생하는 아동으로 상황에 따라 고쳐서 써내려 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글과 끝까지 써어질 글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 1. 미혼모의 정의와 용어의 선택

未婚母(unmarried mother: unwed mother)의 사전적 정의를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미혼모란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sup>1)</sup>라고 했으며,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도 있음을 볼 때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미혼모로 정의하는데 대해, 허남순<sup>2)</sup>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 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정하고 혼전 또는 혼외 임신으로 인공유산한 경우를 미혼모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 Encyclopedia of the social work . ed . (1965), 197쪽.

2) 김지열,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0), 39쪽.

3) 허남순, '미혼모 발생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회지, 제18호(1986), 110쪽.

또 영어사전을 보면 미혼이라는 뜻과 독신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독신모라는 말은 낯선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미혼모라 불리운데는 이들을 사회문제로 부각하게되면서 그들의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 사용을 하되 시대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신보라 부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위 글에서 본 바와 같이 독신모라는 말에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요약된다.

독신모는 상대 남자와 아동까지 포함된다. 임신중절과 혼희 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혼전임신에 한해서 미혼모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II. 역사적 시제 및 아동의 법적 권리

미혼모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편화된 것이었고, 시대와 사회를 달리하면서도 일부나마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sup>4)</sup> 여성의 성논리에 대해 역사는 허용과 통제를 거듭해 왔고, 미혼모라는 진퇴양난의 함정을 만들어 왔다. 즉 사회가 한편으로는 동성애적 관심과 정서적 관여를 권장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본적이며 강력한 성적 충동을 결과적으로 유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광고물, 드라마, 영화 및 문학이 성적인 자유분방함과 육체적인 미를 현대적 여성의 조건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반면 취업구조, 학교 교육등이 결혼연령을 지연시키고 있어 혼전의 성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또 육체적인 미인을 뽑아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선발대회가 있다. 어린 학생들을 벌거벗겨 세워놓고 남자 심사관들이 초대되고 이것도 부족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몇 시간씩 진행하면서, 미인을 순서별로 뽑는다는 사고자체가 해괴한 발상이다. 이런 배후에 또 다른 검은 그림자를 키워 온 것이 이 사회의 커다란 병폐이다. 이러면서 10대들의 성문란을 나무라고, 짚은이를 짓누른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미인선발대회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조선시대의 부녀복지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였다기보다 유교적 이념하에 조혼의 관례라든가 축첩제도의 성행, 여성의 재가금지법의 제정(성종때)과 더불어 기처제도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 졌었던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남성의 지배하에 여성을 묶어 놓았던 남성위주의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

4) 유유박,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0), 2쪽.

5) 한국부인회, 미혼모에 대한 예방적 접근(1983), 48쪽.

상의 잔재에서뿐만 아니라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여성의 권리는 특히 소외당했다. 여기에는 일제치하가 만들어 놓은 합정인 호주제가 크게 뿌리를 내려 여성들은 종과 다름없었다. 지금까지 호주제는 그 위세를 멀치고 급기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쯤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법에 가부장제도까지 합세해서 여성들을 족쇄로 채웠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정실부인과 그 자녀들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차별을 받아왔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지금이나 그 때나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혼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로 못박아 버리고 그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일제치하에서 36년을 노예로 살아오고서도 일제가 남긴 호주제를 왜 버리지 못하고 계승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미 일본은 호주제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일본의 볼모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서구사회에서 미혼모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인구의 대도시의 이동, 근로여성의 증가, 학가족의 발달, 성의 개방 풍조 등으로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하락, 자녀의 법적 지위 문제가 논의되면서 사회문제로 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의 여성운동을 통하여 더욱 강한 욕구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구약성서에서는 사생아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썼으며, 초기 아테네에서는 사생아를 노예로 팔았다. 중세 유럽에서는 사생아를 "Nobody's children" 이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보통 농노 계급에 속해 있었다. 당시 혼한 유아 살해 방지책으로 종교단체에서 육아원을 설립하였는데, 16세기 이태리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부 유럽의 모든 큰 도시에 설립되었다. 중세에는 사생아들이 농노였으나, 프랑스에서는 1789년부터 더 이상 버림받는 사람의 처우를 받지 않았고, 1793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사생아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받게 되었다.<sup>7)</sup>

또, 노르웨이에서는 1915년 Castberg 법의 통과로 아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게 했고, 영국에서는 1576년 Elizabethan law에 의해 사생아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을 부과했다.<sup>8)</sup>

미국 Minnesota주에서는 사생아의 보호와 관리책임을 주에 이전시키는 법률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다른 주에서도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Louisiana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모가 결혼하면 사생아였던 아이도 적자가 되고 상속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sup>9)</sup>

6) Anne dorother Brockmann, 앞의 글, 48쪽.

7) 이성형,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21-22쪽.

8) 김지열, 앞의 글, 22쪽.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권리의 항상 아버지가 우선으로서 민법에 의하면 사생아에 대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친자관계가 있을 뿐이고, 어머니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홀로 일가를 창립해야 한다. 일단 아버지가 인지할 경우에는 서자의 자격을 얻어 부가 호주의 동의 없이 부가에 입적할 수 있게 되고, 재산 상속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서자보다 우선권을 가져 서자는 적자에 비해 그 순위가 아래에 속한다.<sup>10)</sup>

#### 1. 헌법(1987. 10.29. 9次 改正)

헌법의 기본권은 분명히 그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표 1> 헌법의 기본규정

헌법	내 용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보장을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고,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자녀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국민보건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민법(1990. 1.13 7次 改正)

우리나라의 혼인은 민법 제 812조에 따른 법률혼주의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 이성형, 앞의 글, 22쪽.

10) 박윤흔 외 3인 「소법전」 법전출판사, (1990)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와의 사이에는 법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서자와 혼외출생아 사이에도 단순히 신분적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혼외출생아의 생존권확보, 복지혜택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된다. 부가 자발적으로 혼외 출생아를 인지하는 방법외에는 부가에 입적되거나 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민법 제863조에 의해 법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부모의 사망후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민법 제781조와 제 782조는 미혼모 아동의 법적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1) 제 781조(자의 입적, 姓과 本)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창설한 수 부 또는 보를 알게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2) 제 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할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불가할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 3) 제863조(인지청구의 訴)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은 완벽하게 가부장적이고, 파렴치하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렇듯,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조차도 자식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홀로 일가를 창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그에겐 사생아라는 낙인도, 적자도, 서자도 필요 없는 셈이 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엄연히 민법의 유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혹은 제 자식을 유기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소파 방정환<sup>11)</sup> 선생은 대우주의 말초 신경은 노인에게도 청년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새싹회의 설립은 이런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웃고, 뛰놀자,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그런데 어떻게 웃어야 할까. 푸른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커서 일가를 창립 할 생각을 해야 할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회는 아동에게 웃음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은 웃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 모든 아동들에게 혼인

11) 소파 방정환 어린이 선언문에서 마지막 줄.

외의 자든 아니든, 그의 부모의 호적에 오를 수 있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아동의 법적권리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

### III. 단일 법령 제정에 의한 지원체계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란 필요한가' 보다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에도 벌써부터 소비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다.<sup>12)</sup>

우선 외국의 다양한 복지체계를 소개한다. 외국의 경우는 거의 개인적 복지지원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 복지 체계들은 그 사회가 준하는 법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모자복지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자가정에 미혼모 가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모자 복지 재정자체가 빈약한 실정이어서 미혼모는 가정에게 돌아가는 재정은 거의 없고, 모자원 시설도 미혼모 가정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보니 이곳에서의 편견도 미혼모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실제 어느 미혼모의 얘기다.

모자원이 미혼모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정식결혼절차를 거친 사람들에 한하여 이혼, 사별, 등에 의한 시설이라 해서 퇴소하는 날까지 원장의 편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혼모는 미혼모 시설에서도 더부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독신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정은 부녀복지재정에서 일부 지출된다. 1993년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은 전체사회보장비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부녀복지재정은 3.1%로 빈약하다. 독신모 서비스 할당액수는 6천5백만원 정도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선가정 후 사회보장'의 시책 방향으로 가정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체계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신모의 가정도 부녀 복지 재정에 한대 묶여 있는 상태이고,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독신모의 권리은 더욱 보장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그들의 상황을 이용해 사회병리현상으로 치부하며 의식적으로 복지개선을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1998년 보건복지부 통계 총 가구수가 44만 4천 92명인데, 이중 여자 가구수가 24만 7

12) C.Prigmore and C. Atherton. social welfare policy. mass., D.C. Health, Lexington, (1979), 248-249쪽.

천 9백 49명으로 훨씬 많다. 가족 구성원 중 이동비율이 24.2%로 여성과 아동이 주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월 지원수준은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해 16만 2천원의 최저 생계비지만 이것조차 독신모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최저생계비도 줄어들었고, 올해로 수급대상자로 1998년 통계 속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모·부자 가정의 경우 6세 이하 아동에게 하루 분유 80g(5백25원)만 지급되고 있다. 이것도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수준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체계도 중요하지만, 독신모의 단일 법령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부녀 복지법에 포함된 법은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와 같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법령이 마련되면 복지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우리가 편견을 가졌었다는 것을, 법령이 제정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 IV.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남성들에게는 혜용과 관대함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왔다. 이 나라에는 미혼모는 있지만 왜 '미혼부는 단 한명도 없는가'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여성의 성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오면서 오늘날까지 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편견과 억압으로 얼룩져왔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았던 것처럼 미혼부 책임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성의 평등함을 실천하는 길이고, 아동은 그 아버지의 성과 보호를 받은 권리,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민법 7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법이 스스로 그 권위를 잃었다. 아비가 지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유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남성들은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남성이 제 가족 울타리 속에서 사회속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동안 여성은 햇빛들지 않는 처마밑에서 혹은 골방에서 쏟아쳐 내리는 햇살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이렇게 고립되어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았다.

미혼부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두터운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혼부의 호적에도 자가 있음을 기록하고, 이에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또 다른 여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알아본 결과 미혼모가 출산의 소식을 알리면 거의 99%가 입양

을 강요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더욱 심한 경우는 강제로 아기를 빼앗아 가서 입양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럴 경우 혼자의 힘으로는 아기를 되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린다. 법조차도 가부장적 사회의 인식으로 미혼모를 오히려 부도덕한 마녀로 몰아간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의 병폐는 지금 우리들 법체제 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린 상황이라 좀처럼 바꿔려 하지 않는다. 민법 782조를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부임이 밝혀지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며, 아동이 누려야 할 법적 보호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다른 나라의 예로서 그 자료를 첨부한다.

#### 1. 스웨덴의 경우

여성복지가 '부엌에서 탁아소까지'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결과 자녀가 있으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은 전 가구의 1/4에 불과하고 동거부부, 독신모, 미혼모가 더 혼하다. 즉 다양한 혼인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는 시청소속 판사의 주례로 하루 20쌍 정도의 동거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남녀 3쌍 중 1쌍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거행하는 의미는 단지 좋은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일 뿐이라고 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식을 하든 안하든 그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스웨덴의 가족법의 영향이다.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갖가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속에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으며, 생활의 적용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발전자체를 위해 당당하게 미혼모의 길을 걷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 학기에 270만원정도의 학비보조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미혼모학생에게도 그 제도적 지원이 동일하며, 특수학교시설(탁아시설 등)이 있어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며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 1980년대 스웨덴에서는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하여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탁아소가 있을 정도로 많다. 그 결과 아이 10명중 8명은 탁아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비용도 국가가 90%, 부모가 10%를 부담하고 있다. 미혼부도 미혼모와의 합의하

에 정기적으로 자유로이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월 탁아비용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스웨덴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혼자서 자녀를 길러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혼모 자신,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다른 정상가족 형태와 다를게 없어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는 거리가 멀다.

1956년부터 스웨덴은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해 온 결과, 최근 어린시절 불장난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급으로 10대들도 피임을 할 줄 알아서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성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이 방종으로 흐를 땐 엄격한 제제가 가해지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추근대는 남자가 있을 경우 국가비용으로 여성에게 보디가드(경호원)를 채용하는 '경호원 채용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스웨덴의 부모가족제도를 들 수 있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유급으로 양육휴가를 주는 제도로, 부모 어느 한쪽이든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의 봉급의 90%를 받으며, 15개월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아버지는 10일 휴가, 90일간의 병간호휴가, 학교방문휴가 등 자녀양육의 임무수행에 국가도, 아버지 자신도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혼모를 포함한 스웨덴 여성들의 많은 권리는 여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수라는 정계의 Women Power 덕택이다. 스웨덴은 이미 1980년대에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33%로, 사회당내에는 41%가 여성으로 재무부, 내무부 등 굵직 굵직한 자리에서 남녀 구성비율의 50%로 향한 남녀평등 5개년 계획 등을 수립중이다.

이렇듯 스웨덴에서는 미혼모와 사생아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차별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2. 덴마크의 예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중의 하나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성숙한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하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어서, 혼히 임산부나 혼외 출생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되며,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적 서비스 상담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의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父姓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볼 수 있다.

## V. 성교육의 내실화

프랑스에서는 가임 여성에게 피임약과 피임도구를 무료로 주고, 염가로 보급한 후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여 여성건강과 피임효과를 점검하면서 여성은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자모회에 '어린이 성교육을 위한 어른의 계몽'이라는 토론을 통해 어른을 우선 성교육 시키고 있다. 베를린 등에서는 성의 자유를 골자로 하는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에서의 성교육과정을 알아보면(1994 어느 일간지), 잘 알려진대로 북구는 성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다. 그러나 개방이 무절제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구의 성문화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성교육에 의해 형성된 성지식에 의해 뒷받침된다. 덴마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성교육은 유치원과정에서 시작된다. 유치원생들은 먼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 수업시간에 함께 목욕을 한다. 또 아기의 생성과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피임에 대한 논의도 이끌면서 교사들은 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힌다. 초등학교과정의 성교육은 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인체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서 성교육을 가슴, 잘록한 허리, 심지어는 생식까지 자세히 그려놓기도 한다고 한다. 교사는 어린이가 그런 그림을 보고 그 어린이의 성교육수준을 정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동물은 어떻게 새끼를 낳을까?" 등 동식물의 생명탄생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출생에 대한 설명도 듣게된다. 덴마크 초등학교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동일한 교사아래서 지도를 받는 독특한 교육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며 교사는 성교육 수준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성교육을 받은 덴마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배운다. 즉, 인간다운 성이란 무엇인가? 성교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가, 피임법의 종류와 실시 방법은 무엇인가를 익히는 것으로 피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수업시간에 교사는 피임기구를 직접 보여주고 사용법을 가르친다. 남녀학생들은 함께 콘돔을 돌려가며 성교육 교재로 개발된 플라스틱 음경을 써워보기도 한다. 성교육에는 교사회에 학교의사와 청소년 클리닉도 한몫을 하는데 학교의사 1명은 10~20개교의 성교육과 건강진단을 전담한다. 흔히 학교의사의 성교육 강의엔 상근 양호교사가 따른다고 한다. 청소년클리닉은 피임클리닉 등 총 21개가 청소년 성문제와 피임을 상담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성교육을 강화한 이후, 덴마크에서는 강간동 성폭력사건이나 인공유산이 훨씬 감소했다고 하고 포르노 영화관등 섹스산업도 오히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같은 성개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신모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는 독신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성교육 제도가 피상적이며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VI. 사회와 개인적 정서의 고찰

어느 한 개인이 작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인간유형과 인공적인 삶을 반추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탄생된 인공적인 삶을 사회 구석구석에 비추어보고 대화해 나간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듯 선택하고, 발전이라는 전환점을 찾아간다. 인간이기에 행복추구를 설정하고, 삶을 만들어간다. 이속에는 문화적 요소도 포함된다. 문화적인 것은 고통속에서 만든 것일수록 그 시간적 의의는 깊다. 고통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면 그 가치는 지속성에 한계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미적 감각또한 고통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 머리위에 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종은 정해진 것에 따르지 않으면 마녀로 내몰린다. 순결을 강요한 사회가 오히려 성을 상품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성은 순결한 것에 가치가 있을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진리나 정의조차도 강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논문에서는 미혼모를 불행한 여성이라고 써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불행하다고 말한 사회가 불행을 만들었고, 불행에는 기준이 없다.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개인적 정서라는 것은 미묘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개인에서

출발하여 승화된 장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정서가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서는 제2의 자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서적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볼 때, 달리 정서적인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지원체계의 다양성에서 선택적으로 찾아야 한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글은 1998년 제작년 아이를 잃고서 어디서든 용기와 지혜를 찾아 헤매던 때, 우연히 오스카 와일드의 육중기를 발견하고 기쁨과 눈물로 먹어치우듯 읽은 책이었다. 지금도 그 책이 주는 향기가 가셔지지 않는 지라, 한 부분 발췌 소개한다.

와일드는 화려한 문체로 탐미파의 거장으로서 세계적 명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때, 동성애자로 몰려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한다. 그때 나이 41세였다. 그리고 출옥 후 파리로 가서 은둔의 생활을 하며, 창작에 몰두하다 그곳 여관에서 뇌막염으로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그런 그가 사후 98년만에 그러니까 1998년 11월 30일 영국정부가 그에게 복권을 결정했다. 그의 흥상 제막식에서 영국문화장관은 '오늘날 우리는 오스카 와일드 덕분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축사를 보낸다'

많은 사람들은 석방이 되면 감옥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도, 그것은 마음속에 은밀한 치욕으로 여겨 마냥 감추려고만 한다. 그러다가 끝내는 가련하게도 독살당한 사람처럼 구멍으로 파고들어 죽고 만다. 그래야만 하는 그들도 참혹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도 잘못되어 있다. 사회는 소름이 끼치도록 빚을 잊게 만드는 형벌을 개인에게 부과할 권리를 감히 누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천박이라는 더없는 악덕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회스스로의 소행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의 형벌이 끝나면 그대로 내팽겨쳐둘 뿐이다. 말을 하자면 그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순간에 그를 방관해 버리는 것이다. 사회는 실제로 스스로 저지른 소행이 부끄러워 자신들이 벌한 사람들을 피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를 피하거나 돌이킬수도, 보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한 상대를 피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 내가 고통속에서 몸부림 친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니, 사회 또한 나로 하여금 겪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래야만 쌍방 모두에게 잔혹함과 증오가 없을 거라고 나는 내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말은 사후 1세기를 넘기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 VII. 결론

미혼모,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 사회적으로 편견의 잣대를 댈 수 없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꼭 그들이 지목되었고 열심히 잘 살기 위해 노력하여도 그들을 향한 낙인은 빛이 없는 곳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미혼모가 될 가능성은 멀리 있지 않다.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 온 이 틀 속에서는 그 대상은 여성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이듯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의 역사의 시작은 개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어머니를 한번보자. 이들도 미혼모와 다르지 않았다. 거의 혼자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시피 하지 않았는가? 혼인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전부 사생이라고 치부된다. 혼인 정식절차가 개인에게 무엇을 주어왔는가? 또 다른 호객으로 이사를 가서 호주를 만나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부적에 다름 아니며 보이지 않는 족쇄로 여성을 읊아매는 호주제가 아닌가? 이런 호주제를 21세기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신세계가 황폐한 사람들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신모가 낳은 아이를 사생이라고 낙인을 수여한 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이러면서 이 사회는 그들에게 어떤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요구하는 것일까?

독신모를 위한 법령 하나 없이 사회문제가 논의될 때만 수면위로 떠올랐다가 아무도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다시 수장되기를 거듭해왔다. 이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멸감, 잊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체성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편견이나 관습은 21세기가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정말 새로움으로 가득채울 수 있는 21세기에는 생명을 잉태하고도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독신모들의 일이라고 그들에게 나서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들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린지 오래다.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라도 좋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감을 통해서 모색해나가야 한다. 여성이면서 모성인 그들이 인권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자. 모든 여성이 나서야 할 때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고마움을 전해야겠다. 인사말을 먼저 써야하는 것이 예의겠으나, 이런 자리에서 인사말을 쓴다는 것이, 어색한 듯 하여 미루다가 쓰게된다. 이자리 까지 오게된 데에는 여성신문과, 여성의전화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개발원 자료실

에서 직함과 이름을 알 수는 없으나, 내게 논문을 빌려주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땅의 여성과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소외받는 모든 사람에게 제주에서의 3박 4일의 이 행사가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